

2018

# EPR제도의 이해와 실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Korea Packaging Recycling Cooperative

이 책자(개정 2017.12.28.)는 공제회원으로 하여금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서식 등을 안내하여 재활용의무이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의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우리 공제조합 및 관련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1.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	1
1.1 개 요	
1.2 주요 법률개정	
1.3 주체별 역할	
1.4 주요내용	
2. 제도 이행 절차 및 방법 .....	7
2.1 업무흐름도	
2.2 재활용의무율	
2.3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2.4 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2.5 회수·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3. 공제조합 회원가입 및 탈퇴 .....	10
3.1 공제조합 가입	
3.2 회원 탈퇴	
4. 재활용 분담금 산정 방법 등 .....	12
4.1 재활용분담금	
4.2 재활용분담금 산정방법	
4.3 재활용분담금 고지 및 납부, 가산금 등	
5. 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방법 .....	16
5.1 대상업체	
5.2 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서식 및 작성 방법	
5.3 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방법	
5.4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품목 예시	
5.5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제출 방법	
6.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 .....	26
6.1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	
6.2 공제조합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	

# 목 차

7. 분리배출 표시 제도 안내 .....	43
7.1 분리배출 표시 제도	
7.2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7.3 분리배출 표시 지정 신청·승인	
7.4 분리배출 표시 적용예외	
7.5 분리배출 표시도안	
8. 포장공간비율 규정 안내 .....	47
8.1 포장공간비율 규정	
8.2 적용 기준	
9.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소개 .....	49
10. 관계기관 연락처 .....	53
11. FAQ(자주 묻는 질문) .....	55
12. 용어 정의 .....	63
13. 붙임 자료 .....	67
13.1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	
13.2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13.3 장기 재활용목표율(2022년)	
13.4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13.5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13.6 2017년 재질별 분담금 단가	
13.7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명	
13.8 참여약정서	
13.9 회원가입 신청서	
13.10 회원 탈퇴서	
13.1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13.12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 1.1 개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미 이행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EPR제도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현재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체코, 헝가리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하여 왔던 예치금 제도를 보완·개선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의미이며, 생산자·소비자·지자체·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1.2 주요 법률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 □ 주요 변경내용

#### 가. 회수의무 추가 : 재활용의무 + “회수의무” 추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 재활용업체 지원에 집중됐던 정책이 회수부분까지 확대지원 가능

#### 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확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품목 확대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품군에 관계없이 EPR 의무대상으로 포함하되,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는 제외
  -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병입수돗물 의무대상 확대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군 확대

- 5개 제품군(기존) : 운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 비료·사료 포장재(필름),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은 한국농수산물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해 재활용의무이행

**다.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시행규칙 개정 (2016.1.21.)**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환경부고시 제2016-52호]

-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
  - 회수·재활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 ※ 자원재활용법에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기구로 위상이 제고
- 위원회 및 산하 협의회 구성·운영

구 분	구 성 및 기 능
위 원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li> <li>○ 기 능 : 실무협의회에서 검토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li> </ul>
실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성 : 15명 이내 (환경부, 공단, 조합, 센터, 시민단체 등)</li> <li>○ 기 능 : 위원회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조정 실시</li> </ul>
분과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성 : 2개 분과위원회 (의무생산자, 회수·재활용사업자)</li> <li>○ 기 능 : 이해관계자 사전 의견청취</li> </ul>

### 1.3 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소 비 자	○ 제품 및 포장재 사용 후 분리배출
의무생산자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에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 납부)
공제조합(KPRC)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 재질구조개선, 의무이행 인증
지방자치단체	○ EPR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수거 업무 ○ 제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재활용업체	○ 회수·선별된 포장재의 재활용
유통지원센터 (KORA)	○ 공제조합의 회수/재활용사업 수행을 위한 재활용실적 확보 및 제공
환 경 부 한국환경공단	○ 법령 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및 승인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 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1.4 주요 내용

#### □ 의무생산자 기준 및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품목

##### 가. 의무생산자 기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9조,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구 분	내 용	대상자
제 품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제조·수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포장재	대상 포장재를 제품포장에 사용하는 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판매업자 (A, B 모두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li> <li>B. 전년도 포장재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자 단, 유리병은 10톤/년, 발포는 0.8톤/년</li> </ul> </li> <li>■ 수입업자 (A, B 모두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전년도 연간매출액 3억원 이상인 자</li> <li>B. 전년도 포장재 연간 출고량이 1톤 이상인 자 단, 유리병은 3톤/년, 발포는 0.3톤/년</li> </ul> </li> </ul>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매출액·수입액 및 출고량·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연간 매출액 : 의무대상 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포함한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 매출액)
  - 연간 수입액 : 의무대상 업체의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 가격기준이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 주문생산(OEM)인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
  -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 ※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 - [붙임자료 13.1] 참조

#### 나.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품목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영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4개 포장재군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 음·식료식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의약품류, 화장품류, 부탄가스, 살균/살충제, 의복류, 종이제품류, 고무장갑, 윤활유, 그 외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
  - 7개 제품군 :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 ※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붙임자료 13.2] 참조

### □ 장기 재활용목표율 및 재활용의무율 고시 등

#### 가. 장기 재활용목표율 고시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의 생산·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고시하고 매년 재활용의무율에 반영
- ※ 장기 재활용목표율(2022년) - [붙임자료 13.3] 참조

나. 재활용의무율 고시 : 의무이행 전년도 12월중 환경부장관이 고시

다. 재활용의무율 : 생산자출고·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라. 재활용의무량 : 당해 연도(의무이행연도) 포장재 출고·수입량 × 당해 연도 재활용의무율

## □ 재활용의무이행방법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

- 이행 방법 : 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
  - 단,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한 자는 그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 재활용분담금과 재활용부과금

### 가. 재활용분담금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 제29조]

-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담하는 금액
- 재활용분담금 = 당해 연도 포장재별 출고·수입실적량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포장재별 분담금 단가

### 나. 재활용부과금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재활용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함은 자원재활용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법 제27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부과하는 자 : 한국환경공단
- 부과받는 자
  -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공제조합)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 부과 및 납부 시기
  - 부 과 : 매년 7월31일까지(100만원이상 분납 가능, 연2회 균등 분할)
  - 납 부 : 해당 연도 8월31일까지 (분납일 경우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30일까지)

#### □ 재활용부과금 산정식

○ 재활용부과금 :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 회수 · 재활용의무량 - 회수 · 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 : 100분에 2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후 :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 2.2 재활용의무율

### □ 재활용의무율 고시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개시 전에 재활용의무율을 고시 (전년도 12월말까지)

※ 포장재 재활용의무율과 재질별 분담금 단가는 공제조합 홈페이지 참조  
(www.pkg.or.kr ⇒ 자료실)

## 2.3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내용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출대상 : 공제조합 또는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공제회원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제출

-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제출자료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붙임자료 12.4) 참조

- 제출기한 : 당해 연도 1월 31일

※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의 경우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일로 부터 30일 이내, 12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

## 2.4 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제출 내용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제출대상 : 모든 의무생산자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여부와 무관)

-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제출기한 : 당해 연도 4월15일까지

-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별지 제9호의2서식)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제출 서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 서류	1.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업자) 수입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별지 제3-5호서식

※ 작성방법 : 5. 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작성방법(16page) 참조

## □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시 조치 사항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6항, 16의3]

- 부과하는 자 : 한국환경공단

- 부과받는 자 :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업체

※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자,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5 회수·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 □ 회수·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내용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8조 제2항, 동법 영 제26조, 규칙 제 17조]

- 제출대상 : 공제조합 또는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3

※ 공제회원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제출

-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제출기한 : 의무이행년도 다음연도 4월 30일

- 제출자료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붙임자료 12.5) 참조

- 기재내용 : 재활용사업자 관련사항,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초과 재활용실적 사용량

- 재활용실적 증빙서류 :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계량표,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확인 자료

※ 한국환경공단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무생산자에게 상기 자료 요구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공제회원증을 발송

## 3 공제조합 회원가입 및 탈퇴

### 3.1 공제조합 가입

#### □ 회원의 종류와 가입 자격

##### 가. 회원의 종류

- 공제회원, 개별이행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

##### 나. 가입 자격

- 공제회원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회수·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 개별이행회원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동법 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
- 일반회원
  -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포장재 관련사업자, 재활용 관련 사업자, 재활용제도 또는 기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

#### □ 회원가입 관련 구비서류

##### 가. 공제회원 가입 제출서류

- [근거 : 정관 제17조, 회원관리규정 제3조]
  - 참여약정서 [붙임자료 13.8 참조]
  - 회원가입신청서 [붙임자료 13.9 참조]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전년도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포장재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포함)

### 나. 개별이행회원 가입 제출서류

- [근거 : 정관 제17조, 회원관리규정 제4조]
- 공제회원 가입 제출서류 포함 및 분담금 납부신청서

### 다. 일반회원 가입 제출서류

- [근거 : 정관 제17조, 회원관리규정 제5조]
- 공제회원 가입 제출서류 포함 및 분담금 납부신청서

## 3.2. 회원 탈퇴

### 가. 탈퇴 문서 접수

- 회원이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 [붙임자료 13.10 참조]

### 나. 탈퇴 처리

- [근거 : 정관 제21조, 회원관리규정 제9조]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폐업한 경우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제회원으로서 탈퇴 처리
  - 정관 제18조(회비) 및 제45조(분담금)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정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조합과의 연락두절 등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4.1 재활용분담금

-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 부담하는 금액

### 4.2 재활용분담금 산정 방법

- 재활용분담금은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고, 다음해에 정산

가. 재활용분담금 = 당해 연도 재활용 의무량 × 공제조합에서 정한 당해 연도 재활용분담금 단가

- 당해 연도 재활용의무량 = 당해 연도 포장재별 출고·수입실적량 × 당해 연도 포장재별 의무율
- 공제조합에서 정한 당해 연도 포장재별 분담금 단가 [붙임자료 12.6 참조]

나. 당해 연도 재활용분담금 최종 납부액

- 재활용분담금 산정액 + 전년도 재활용분담금 정산액
  - 재활용분담금 산정액
    - = 전년도 포장재별 출고·수입실적량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포장재별 의무율 × 공제조합에서 정한 당해 연도 포장재별 분담금 단가
  - 전년도 재활용분담금 정산액
    - = (전전년도 포장재별 출고·수입실적 - 전년도 포장재별 출고·수입실적) × 전년도 포장재별 의무율 × 전년도 공제조합이 정한 포장재별 분담금 단가
- ※ 포장재 재활용 의무율과 포장재별 분담금 단가는 공제조합 홈페이지 참조 ([www.pkg.or.kr](http://www.pkg.or.kr) ⇒ 자료실)
- ※ 전년도 분담금 정산 : 전전년도 출고·수입실적기준으로 납부한 전년도 분담금은 6월에 정산(일시납) 실시

## 4.2 재활용분담금 고지 및 납부, 가산금 등

### □ 재활용분담금 고지 및 납부

- [근거 : 공제조합 사업운영규정 제5조의2제1항]
  - 고지하는 자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고지받는 자 : 공제회원
  - 공제조합 사업운영규정 제5조의2제1항

구 분	재활용분담금		전년도 분담금 정산
	5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고지 일정	4회(3, 6, 9, 11월) 분할납부	일시납부(6월)	일시납부(6월)

#### - 분담금 고지 개요

구 분	산출 방법	고지 대상
1차(3월)	○ 전년도 재활용분담금 ÷ 4	전년도 분할 납부
2차(6월)	○ (재활용분담금 산출액 - 1차) ÷ 3 + 전년도 재활용분담금 정산액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
3차(9월)	○ (재활용분담금 산출액 - 1,2차) ÷ 2	분할 납부
4차(11월)	○ 재활용분담금 산출액 - 1, 2, 3차	분할 납부

#### 가. 기존 공제회원

- 1차(3월) 분담금은 전년도 재활용분담금 총액의 1/4 금액으로 청구
- 2~4차(6, 9, 11월) 총 재활용분담금에서 기 납부한 분담금을 차감한 후 분할 고지

#### 나. 신규 가입 공제회원

- 해당 의무생산자의 전년도 출고 실적에 따라 공제조합 사업운영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적용하여 고지

#### 다. 기 타

- 재활용분담금 산정액과 각 차수 별 고지 분담금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

- 분담금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하지 아니함. 다만, 정산액과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합한 금액이 1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연도 합산하여 청구

라. 재활용분담금 고지 일정표

일 정	분담금 관련 업무	내 용	비 고
1차(3월)	분담금 1차 고지	1/4회차	전년도 분할납부자
	1차고지 8일후	1차 독촉 공문 발송	가산금 3%
	1차 독촉 납기일 이후	2차 독촉 공문 발송	가산금 5%
2차(6월)	분담금 2차 고지	2/4회차, 일시납	전년도 분할납부자
	2차고지 8일후	1차 독촉 공문 발송	가산금 3%
	1차 독촉 납기일 이후	2차 독촉 공문 발송	가산금 5%
	2차 독촉 납기일 이후	2회 미납업체 탈퇴처리	
3차(9월)	분담금 3차고지	3/4회차	전년도 분할납부자
	3차고지 8일후	1차 독촉 공문 발송	가산금 3%
	1차 독촉 납기일 이후	2차 독촉 공문 발송	가산금 5%
	2차 독촉 납기일 이후	2회 미납업체 탈퇴처리	
9월 30일		일시납 미납업체 탈퇴처리	
4차(11월)	분담금 4차고지	4/4회차	전년도 분할납부자
	3차고지 8일후	1차 독촉 공문 발송	가산금 3%
	1차 독촉 납기일 이후	2차 독촉 공문 발송	가산금 5%
	2차 독촉 납기일 이후	2회 미납업체 탈퇴처리	
12월 30일		연간 미납업체 탈퇴처리	

## □ 가산금

○ [근거 : 공제조합 사업운영규정 제8조]

- 부과하는 자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부과받는 자 : 분담금을 납부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은 공제회원 및 출고·수입실적서 지연 제출 공제회원

### 가. 재활용분담금 미납 가산금

- 1차 독촉 :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8일 이후, 고지금액의 2%의 가산금 부과
- 2차 독촉 : 1차 독촉 납기일 이후, 고지금액 3%의 가산금 부과
- 예) 분담금이 1,000만원일 때, 1차 독촉 후 미납부하여 2차 독촉의 경우

구 분	분담금(A)	가산금(B)	총납부금(A+B)
1차 독촉	1,000만원	20만원(2%)	1,020만원
2차 독촉	1,000만원	30만원(3%)	1,030만원

### 나. 탈퇴 처리

- (일시납부) 1,2차 독촉 고지 후 9월30일까지 미납할 경우
- (분할납부) 2회차의 걸쳐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다. 가산금 면제

- 재활용분담금 납부기한 후 7일 이내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천재지변 등 의무생산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분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5

## 포장재의 출고 · 수입실적서 작성 방법

### 5.1 대상 업체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 · 출고량, 수입액 · 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

### 5.2 포장재의 중량 · 용량 산출기초자료 서식 및 작성 방법

#### □ 서 식

①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구 분	②상 품 명(규격)	③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④연간 출고량 (개)	⑤제품/포장재 출고량(kg)	비 고
자사 브랜드	계			⑥	
타사 브랜드	계				⑦

①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구 분	②상 품 명(규격)	③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④연간 출고량 (개)	⑤제품/포장재 출고량(kg)	비 고
자사 브랜드	계			⑥	
타사 브랜드	계				⑦

## □ 작성 방법

-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을 참고하여 택일 기재
- ② 상품명(규격) : 상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예시: 아침우유 200ml, 아침우유 500ml)
- ③ 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 대상품목이 「포장재군」일 경우 상품 전체의 무게가 아닌 수분 및 내용물을 제거한 부분품을 포함한 포장재의 단위중량(g) 기재
  - ※ 단위 포장재의 무게는 전자저울 등으로 0.01g 단위로 계량하며, 계량방법은 날개로 계량하지 않고 1kg정도가 되도록 여러 개를 모아서 무게를 재고, 이를 단위 포장재의 개수로 나누어서 개당 평균 중량을 산출 (소수셋째 자리 절사)
  - ※ 단, 다음의 경우는 해당 포장재를 10배수 정도 모아 중량을 측정 · 산출할 수 있음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EPS, PSP, 필름류 포장재
    - 개당 단위중량이 100g 이하인 포장재
- ④ 연간 출고량 : 해당 상품의 연간 출고량을 「개」 단위로 기재
- ⑤ 포장재 출고량(kg, 소수점이하 절사) : ③ 개당 제품/포장재 무게(g) × ④ 연간 출고량(개)
- ⑥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의 「⑧~⑨수량 합계량」과 동일
- ⑦ 타사 브랜드의 경우 타사(OEM 주문자)의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주소 기재
- ⑧ 유의 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제조업체	국내 소비용으로 출고된 포장재 및 제품의 무게를 기재
	※ 연간 출고 실적을 자사브랜드로 출고한 양과 타사(주문자)브랜드로 납품한 양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교란에 납품한 주문자(상표권자) 명시 (즉, 타사(주문자) 브랜드로 납품한 양은 자사의 출고량에 포함되지 않음)
수입업체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수입(통관기준)한 포장재 또는 제품의 무게 전량을 기재
소수점	개당 중량(0.01g), 전체 출고량(kg, 소수점이하 절사)
자사 / 타사 구별	타사의 경우 OEM거래처 정보 표기 (거래처 명, 사업자번호, 주소 등)
합 계	제품/포장재 품목별로 합계하며, 품목별 소계의 소수점은 버림
중량 산출 방법	①평균 중량 실측 (A개 측정 후 나누기 A) 또는 ②제조사의 시험성적서 참조

증빙자료 1	증빙자료 2
연간 출고 수량(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품되어 폐기되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 제외 시에는 폐기증명서류 증빙
예) 연간 출고관련 전산자료 출고 수불관리대장, 수입신고필증(면장) 포장재 구매 명세서 및 영수증 사본 등	예) 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계량표 등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작성 예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명		① 철캔 (뚜껑일체형)			
구 분	상 품 명(규격)	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수량(개)	② 제품/포장재 출고량(kg)	비고
자사 브랜 드	↓ 계	↓	↓	↓ 2,864	
	실제 판매되는 제품명 (모델명)	개당 실측 중량(g) : 소수점둘째자리까지 산출	'14년 연간 출고수량(개)	개당 중량(g) × 연간출고수량(개) = 연간출고량(kg) : 소수점 절사	
	자사상표부착 판매				
	예) 케이에코 고추장 1kg	602.02g	1,200	722	
	케이에코 고추장 2kg	821.05g	2,609	2,142	
타사 브랜 드	계			1,026	
	OEM 공급 내역  (타사상표부착 판매)				예시)공급 처:**대형 마트/ 사업자번 호:123-45 -678/ 대표자명: 홍길동/ 주소:경기 도 00시 00동00번 지
	예) 대형마트 고추장 1kg	821.05	1,250	1,026	



- 상호(공장명칭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명 포함 기재) 및 전화번호 기재
- 주소 : 상호에 기재된 업체의 소재지를 기재
- 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개인사업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대표자 성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기재
-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을 참고하여 택일 기재  
(해당 제품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 출고량 : 수량에는 (제조업체)포장재 사용량 또는 제품 출고량(소수점 이하는 절사)을 기재, 단위에는 포장재의 경우 kg을 기재
- 수입량 : 수량에는(수입업체)포장재 및 제품 수입량(소수점 이하는 절사)을 기재, 단위에는 포장재의 경우 kg을 기재
- 단위 : 형광등은 [개], 윤활유는 [l], 전지류는 [g], 나머지는 [kg]으로 기재
- 출고량, 수입량의 합계량은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의 자사브랜드 제품/포장재 출고량 계와 동일
- 제출인 : 대표자 성명에 기재된 자의 서명 또는 직인

※ 작성시 유의사항

구 분	작성시 유의사항
연간 총 매출액	의무대상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표기 (법인 총 매출액)
연간 총 수입액	의무대상 업체의 연간 총 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입액을 표기

## 〈EPR 대상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작성예시〉

예시) A업체(제조업)	연간 총매출액	출고량	
		포장재	제품
	50억원	(자사) 철캔(뚜껑일체형) : 2,864kg	
		(타사) 철캔(뚜껑일체형) : 1,026kg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20\*\*년도)

※ EPR시스템([www.iepr.or.kr](http://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수입량		*연간 총매출액 (백만원)	*연간 총수입액 (백만원)
		수량	단위 (kg, l, g, 개)	④수량	⑤단위 (kg, l, 개)		
자 료 제 출 내 용	「EPR품목」에서 선택	중량·용량산출기초 자료의 자사브랜드 출고량 계 (타사브랜드는 기재하지 않음)	단위만 기재				
	↓	↓	↓			↓	
	철캔(뚜껑일체형)	2,864	kg			5,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⑫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	--

## □ 산출 방법

- 자료 작성 기준 : 해당연도 제품수불부, 수입제품관리대장 등
- 출고·수입량
  - 측정된 단위중량과 출고수량의 곱으로 기재
  - 제조업체 : 제조하여 내수용으로 출하 물량(제품수불부 기준)
    - 예시 : 생산량 1,000톤/년, 출고량 800톤/년이면, 신고해야 할 실적은 800톤/년임
  - 수입업체 :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수입한 물량(통관기준)
    - 포장재 출고·수입량(kg) = 포장재별 단위중량(g) × 출고·수입량(개)
- 포장재 단위중량 측정방법
  - 수분 및 내용물을 제거하고 포장재(부분품 포함)만의 단위중량 측정
  - 단위중량은 전자저울 등으로 1/100g(0.01g) 범위로 계량(소수점 3째 자리 절사)
  - 계량방법은 1kg 정도가 되도록 여러 개를 모아 중량을 측정하고, 단위 포장재의 개수로 나누어서 개당 평균중량을 0.01g까지 산출
  - 기타
    - 공인자료(해당포장재의 시험성적서등)가 있는 경우 자료상의 수치로 같음할 수 있음
    - 실적서 기재 단위 : 단위중량 측정 시 그램(g)단위, 출고량 실적서 기재 시 킬로그램(kg)단위
    - 포장재의 단위중량은 뚜껑, 마개, 라벨 등 부분품의 재질과 관계없이 포장재 단위 중량에 부분품의 중량을 포함하여 산출  
(포장재 단위 중량 = 포장재 본체 중량 + 재질 무관 부분품 중량)
- 오차 적용범위
  - 출고·수입실적서상 제출한 품목별 출고량 대비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출고량과의 상대오차 ±2% 이내(단, 의무생산자가 포장재별 오차 발생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시 작은 부분을 선택 적용)

## □ 출고·수입량에서 제외되는 물량

### ○ 반품 후 폐기된 물량

- 반품되어 폐기된 물량은 폐기 증명서류를 비치(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계량표 등)
- 수출한 물량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량
  - 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실적증명서-한국환경공단 제출용) 등
  -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의 기준은 환경부 예규 제458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장의 규정을 준용

## □ OEM(주문자생산)제품 수급·공급량

### ○ OEM제품은 타사브랜드의 출고량에 포함하여 산출

### ○ OEM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서식 참조)에 주문자의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반드시 기재

- ※ 한국환경공단에서 출고실적 확인 주문자(수급자) 수급량과 공급자의 공급량을 상호 확인함

- 예시 : A업체가 B업체에 제품 생산(100톤)을 주문하였고, A업체는 B업체가 하청 생산한 제품(100톤)에 자사의 상표(브랜드)를 부착하여 출고하였고, B업체는 A가 주문한 제품 외에, 자사의 제품 50톤을 생산하여 출고하였을 경우 A업체와 B업체의 의무이행 관계는?

- ▶ A업체는 자사 100톤을 신고하고, B업체는 자사 50톤, 타사 100톤을 신고해야 됨

## □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작성 요령

-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출고량을 일괄 제출 시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하여 기재

### 5.4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품목 예시

구 분 1		구 분 2	
유리병(뚜껑테일체형)	유리병(뚜껑테분리형)	철캔(뚜껑일체형)	철캔(뚜껑분리형)
뚜껑테가 뚜껑과 함께 분리되어 배출	뚜껑테가 뚜껑이 아닌 유리병에 남아 배출	뚜껑이 금속캔과 분리되지 않고 배출	뚜껑이 금속캔과 분리되어 배출
			

종이팩	발포합성수지(EPS) (스티로폼)	단일복합재질 PVC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PSP)
			

용기류.트레이 (PE,PP,PS)	복합재질 필름류	PET병 (무색, 유색, 복합)	
			

## 5.5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제출 방법

-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www.iepr.or.kr](http://www.iepr.or.kr))에 접속하여 입력 증빙서류 파일 첨부 (출고·수입실적서 입력 후 내용 반드시 확인)
-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 제출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한국환경공단의 출고·수입실적 주요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접속 및 입력방법 -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26page) 참조
  - 결산서(부속 명세서) 및 제품수불부, 수입제품관리대장 등에 기재된 기준 연도에 생산·수입한 전 품목 및 출고량 확인
  - 수출입량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실적증명서 등으로 확인(한국환경공단 제출용)
  - 포장재 단위중량 확인(시험성적서 또는 직접 측정)
  - OEM 제품의 수급량 및 공급량 확인
  - 기 제출한 출고량에 EPR비대상 포함여부 확인(수출량, 반품 후 폐기량 등)

# 6

##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

### 6.1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

※ 기존 EPR시스템 사용자는 「나. 출고수입실적 메뉴 이동」 부터 진행

#### 가. EPR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및 사용 신청 (① ~ ④)

1 <https://www.iepr.or.kr/>

① EPR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iepr.or.kr/>)

② 회원가입 클릭

③ 사업자번호 입력

④ 가입여부 확인 버튼 클릭

업체등록/수정

STEP 1 가입여부 확인

STEP 2 회원약관 동의

STEP 3 일반현황 저장

STEP 4 회원가입 완료

가입여부 확인

등록된 회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신 후 가입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3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입력하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고객님의 명백한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가입여부 확인



⑤ 메시지 확인 버튼 클릭



**회원약관 동의**

회원가입을 위해서 아래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세요.

6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일괄동의를 제공**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각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EPR인원처리시스템 (이하 "당 사이트") 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본 약관을 동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제1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1. <EPR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에 동의합니다.



⑦ 하단의 동의 버튼 클릭



**사업자 정보**

\* 사업자구분

8

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제품 공제조합  빈용기보증금  비대상업체  OEM업체  회수업체  포장재 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⑧ 사업자 구분(의무생산자) 선택



⑨ 다음 버튼 클릭

**일반현황 저장**

필수입력사항(\* 표시)은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0

**사업자 정보**

• 사업자명	<input type="text"/>
• ID	<input type="text"/> (아이디 체크) <small>* ID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최선을 다코할 수 있는 I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small>
• PASSWORD	<input type="text"/> (영문, 숫자, 특수문자(.,!,@,#,%,&,*,&apos;~) 포함 8~10자리 이내)    • PASSWORD확인 <input type="text"/>
• 대표자명	<input type="text"/> •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139-02-33929"/>
법인번호	<input type="text"/>
• 주소	<input type="text"/> (우편번호 검색)
• 관할분부	선택 <input type="text"/> <small>* 사업장주소에 따라 자동 설정되나, 변경을 원하시면 직접 설정하시기 바랍니다.</small>
• 대표전화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홈페이지 <input type="text"/>
• 사업자구분	의무생산자
규모여언어부	<input type="checkbox"/> 규모미만

11

**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input type="text"/>	• 부서명	<input type="text"/>
• 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휴대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팩스번호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이메일주소	<input type="text"/>
• 공문수신주소	<input type="text"/> (우편번호 검색)		

**첨부파일 등록**

<input type="checkbox"/>	파일구분	파일명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pdf
<input type="checkbox"/>	가타	재직증명서.pdf

↓

12    **파일첨부**    파일삭제    초기화

13

14    **저장**    취소

**10 사업자정보 입력**

\* 패스워드는 반드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 8~10 자리로 설정

**11 담당자정보 입력**

**12 파일첨부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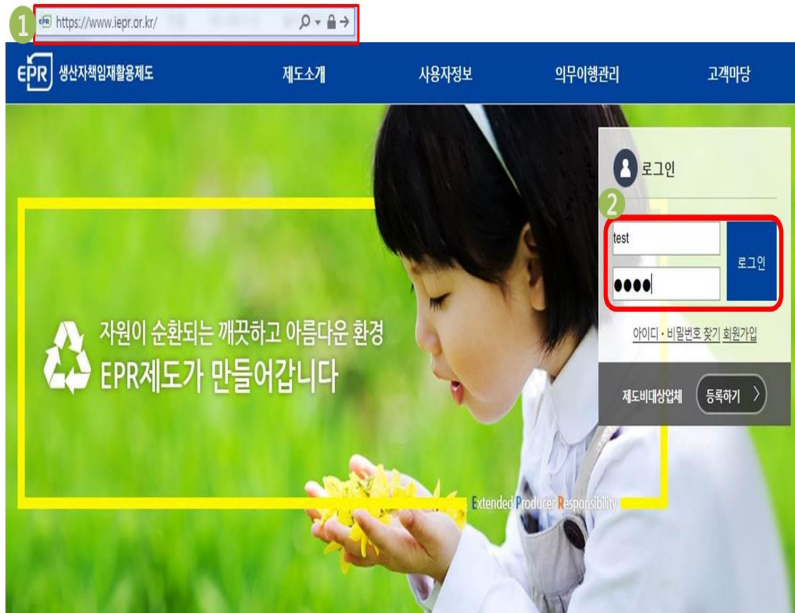
**13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재직 증명서 첨부**

\*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 재직 증명서 생략 가능  
\* 재직증명서 상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에는 반드시 뒷자리 7 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첨부

**14 저장 버튼 클릭**

\* 공단 관할분부 담당자 승인 (1~3일 정도 소요) 후 시스템 사용 가능

## 나. 출고·수입실적 메뉴 이동 (① ~ ⑤)



① EPR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iepr.or.kr>)

② 아이디/패스워드 입력하여 로그인



③ 출고수입실적 제출하기 메뉴 클릭하여 이동 또는

④ 출고수입실적 메뉴 클릭

⑤ 작성 버튼 클릭

다. 출고·수입실적 작성·제출 (⑥ ~ ⑳)

(1) 연간 매출액, 총수입액 입력 (⑥ ~ ⑦)

⑥ 출고년도 해당연도 확인

⑦ 연간 매출액/총수입액 기재

- \* 연간 매출액은 대상 제품·포장재 매출이 아닌 **사업장(법인) 전체 총 매출액**을 기재
- \* **제조업체**는 매출액과 출고량(제조수입구분 '제조' 선택)을 기재하고 **수입업체**는 수입액과 수입량 기재
- \* **규모미만 업체**는 반드시 하단의 증빙서류 첨부  
→ **미첨부 시, 의무대상으로 확인**

구 분	증빙서류
매 출액	손익계산서, 부가세표준증명서 등
수 입액	수입실적증명서(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 등

(2) 중량산출기초자료 탭 작성 (⑧ ~ ⑭)

⑧ 중량산출기초자료 탭 클릭

⑨ 품목추가 버튼 클릭

⑩ 품목코드 검색 버튼 클릭

재활용 품목코드 검색

품목코드:

품목대분류명: 전체  품목중분류명:

■ 검색결과

품목코드	품목대분류명	품목중분류명
<input type="checkbox"/> 0110	종이팩	종이팩
<input checked="" type="checkbox"/> 0210	유리병	유리병(뚜껑테일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0220	유리병	유리병(뚜껑테분리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0310	금속캔	철캔(뚜껑일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0320	금속캔	철캔(뚜껑분리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0330	금속캔	알루미늄캔(뚜껑일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0340	금속캔	알루미늄캔(뚜껑분리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0410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PET병-무색단일재질
<input checked="" type="checkbox"/> 0411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PET병-유색단일재질
<input type="checkbox"/> 0412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PET병-복합재질
<input type="checkbox"/> 0413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PET병-혼합
<input type="checkbox"/> 0420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발포합성수지(PSP제외)
<input type="checkbox"/> 0430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PSP)
<input type="checkbox"/> 0440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단일 복합재질 PVC
<input type="checkbox"/> 0450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기타 다익재질 용기류 트레이

\* 종량산출기초자료 작성후 상단 저장버튼을 클릭한후 출고수입실적서를 작성하십시오.

<단계1> 종량산출기초자료 <단계2> 출고수입실적서

출고년도	품목코드	품목대분류명	품목중분류명	상품명및규격	제조수입구분	연간출고수입량(개)	개당무게	개당무게단위	출고수입량	단위	자사구분
2014	0411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PET병-유색단일재질		제조	0	0	G	0.00	KG	자사
2014	0410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PET병-무색단일재질		제조	0	0	G	0.00	KG	자사
2014	0320	금속캔	철캔(뚜껑일체형)		제조	0	0	G	0.00	KG	자사
2014	0310	금속캔	철캔(뚜껑분리형)		제조	0	0	G	0.00	KG	자사
2014	0220	유리병	유리병(뚜껑테분리형)		제조	0	0	G	0.00	KG	자사
2014	0210	유리병	유리병(뚜껑테일체형)		제조	0	0	G	0.00	KG	자사

\* 결산보고서등 계통포장재 출고수입량 증명자료, 매출액 증명서류(매출액10억원 미만, 수입액 3억원 미만업체)등 첨부

파일명	타입	파일 사이즈	비고

출고수입실적 등록/수정

출고년도	2014년	의무생산지	45954 test20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125 -25 -13700
연간매출액	1,000,000,000 원	대표자명	test
연간총수입액	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자일로 1 (금 test)
승인상태	작성	조합가입여부	미가입
법인번호	125 -25 -13700	제조수입구분	
비고			

11 품목코드 선택(중복선택 가능)

12 확인 버튼 클릭

13 품목별 상품명및규격, 제조 수입 구분, 연간출고수입량(개), 개당무게, 자사구분 입력

\* 상품명및규격 예 : 아침우유 200ml  
 \* OEM(주문자생산) 방식에 의해 출고하는 경우 구분을 '타사'로 설정하고 타사 정보 입력  
 → 타사 실적에 대한 재활용의 무 없음

14 저장 버튼 클릭

### (3) 출고수입실적서 확인 및 최종제출(15 ~ 21)

※ 출고수입실적서 입력은 중량산출기조자료를 저장하신후 입력가능합니다.

16 전년도출고수입실적

<단계1>중량산출기조자료를 <단계2>출고수입실적서

품목코드	대분류명	중분류명	자사구분	제조수입구분	출고수입량	단위	의무면제여부		
							사업자번호기준	법인번호기준	확인결과
0210	유리병	유리병(뚜껑데일터형)	자사	제조	36,000.00	KG	규모미만	법인번호없음	
0220	유리병	유리병(뚜껑데분리형)	자사	제조	25,000.00	KG	규모미만	법인번호없음	
0310	금속캔	철캔(뚜껑일체형)	자사	제조	16,000.00	KG	규모미만	법인번호없음	
0320	금속캔	철캔(뚜껑분리형)	자사	제조	9,000.00	KG	규모미만	법인번호없음	
0410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PET병-무색단일재질	자사	제조	4,000.00	KG	규모미만	법인번호없음	
0411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PET병-무색단일재질	자사	제조	1,000.00	KG	규모미만	법인번호없음	

15

#### 15 출고수입실적서 탭 클릭

\* 중량산출기조자료를 탭에서 작성한 **품목별 출고수입량 집계 결과 및 규모미만여부 확인**

\* **규모미만여부는 전년도 매출액/수입액, 출고수입량에 따라 결정**

→ 의무대상, 규모미만



출고수입실적 등록/수정

18 저장 최종제출

출고년도: 2014년

법인등록번호: [ ]

연간매출액: 1,000

연간총수입액: [ ]

승인상태: 작성

법인번호: [ ]

비고: [ ]

19 출고수입실적을 최종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 결산보고서등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증빙자료, 매출액 증빙서류(매출액10억원 미만, 수입액 3억원 미만업체)등 첨부

17 파일명

파일명	타입	파일 사이즈	비고



19 웹 페이지 메시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1 확인

#### 16 전년도 출고수입실적 조회 가능

#### 17 제품수불부, 수입신고필증 등 출고수입량 증빙자료 첨부

#### 18 저장,최종제출 버튼 클릭

#### 19 최종제출 여부 확인 메시지

#### 20 제출완료 메시지 확인

## 6.2 공제조합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

### □ 회원사 등록하기



## 가. 로그인 - 메인 화면

- 재활용의무이행 관리 시스템 로그인화면
- 조합인증서 로그인 및 회원사 등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이행 관리 시스템

① 조합인증서 로그인

② 회원사 등록하기

③ 인증서 선택

일반

Magic Line

저장매체 선택

하드디스크 이동식 보안토큰 저장토큰 유대폰 스마트인증 (USB/SD)

발급기관	종도	만료일
EPR	매직가드	2025-06-11

인증서가 없을 경우 '찾아보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찾아보기](#)

인증서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확인 취소 인증서 보기

ver 1.1.0.35 Copyright (C) 2007, DreamSecurity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용시 유의사항

-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양호는 주기적으로 변경관리하시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고객님의 사용을 위한 조합인증서의 인증서 만료일이 유효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인증서가 아닌 경우 또는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 포장재공제조합에서 발급하고 있는 조합인증서를 받은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 ① 조합인증서 로그인 : 조합인증서 선택 후 로그인
- ② 회원사 등록하기 : 회원사 등록 페이지로 이동
- ③ 인증서 :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 나. 회원정보등록 - 메인 화면

### ○ 회원정보 등록

등록신청 취소  
1 2

**■ 회사정보**

상호*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214-82-14981"/> *종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중복확인	대표자*	<input type="text"/>
사업자구분*	<input type="radio"/> 개인 ( 대표자 생년월일: <input type="text"/> ) (예: 501231) <input type="radio"/> 법인 (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radio"/> 지방자치단체		
업태	<input type="text"/>	종목	<input type="text"/>
업종	<input type="text" value="선택"/>	주요 생산 제품*	<input type="text"/>
사업장 주소*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드롭명찾기"/> <input type="text"/>		
팩스번호	<input type="text"/> (예: 02-123-4567)		
기업규모*	연간총매출액: <input type="text"/> 백만원 / 연간수입액: <input type="text"/> 백만원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수입액 기록		
은행*	<input type="text" value="선택"/>	계좌번호 *	<input type="text"/>
예금주*	<input type="text"/>		

**■ 업무담당자정보**

성명*	<input type="text"/>	부서/직급*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드롭명찾기"/> <input type="checkbox"/> 상동(사업장주소 동일) *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등록해 주십시오		
회사전화번호*	<input type="text"/> (예: 02-123-4567)	휴대폰번호*	<input type="text"/> (예: 010-123-4567)
이메일*	<input type="text"/>	팩스번호*	<input type="text"/> (예: 02-123-4567)
업무대행자 성명	<input type="text"/> (담당자 부재 시 상담가능 직원)	업무대행자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예: 02-123-4567)

**■ 세무담당자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접수인)**

성명*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상동(담당자정보 동일)	부서/직급*	<input type="text"/>
회사전화번호*	<input type="text"/> (예: 02-123-4567)	휴대폰번호*	<input type="text"/> (예: 010-123-4567)
이메일*	<input type="text"/>	팩스번호*	<input type="text"/> (예: 02-123-4567)

**■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통장사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기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jpg의 속성업로드만 가능하며 원본을 스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류등을 zip로 압축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등록신청 : 입력한 회원사 정보 등록을 신청

② 취소 : 회원사 가입이 취소되며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 다. 조합인증서 재발급① - 메인 화면

- 조합인증서 메일을 받으면 인증서 다운로드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 가능

☆ 공제조합에서 발송하는 포장재공제조합 테스트님의 인증서 재발급 메일입니다.  15-11-06 (금) 14:09

보낸사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admin@pkg.or.kr>  
받는사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이행 시스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회원사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테스트사는 가입이 완료 되었으며,  
참조번호 [18858](#), 인가코드 [535582643628627556](#) 으로 인증서가 발급 되었습니다.  
[www.pkg.or.kr](http://www.pkg.or.kr) 로 방문 하셔서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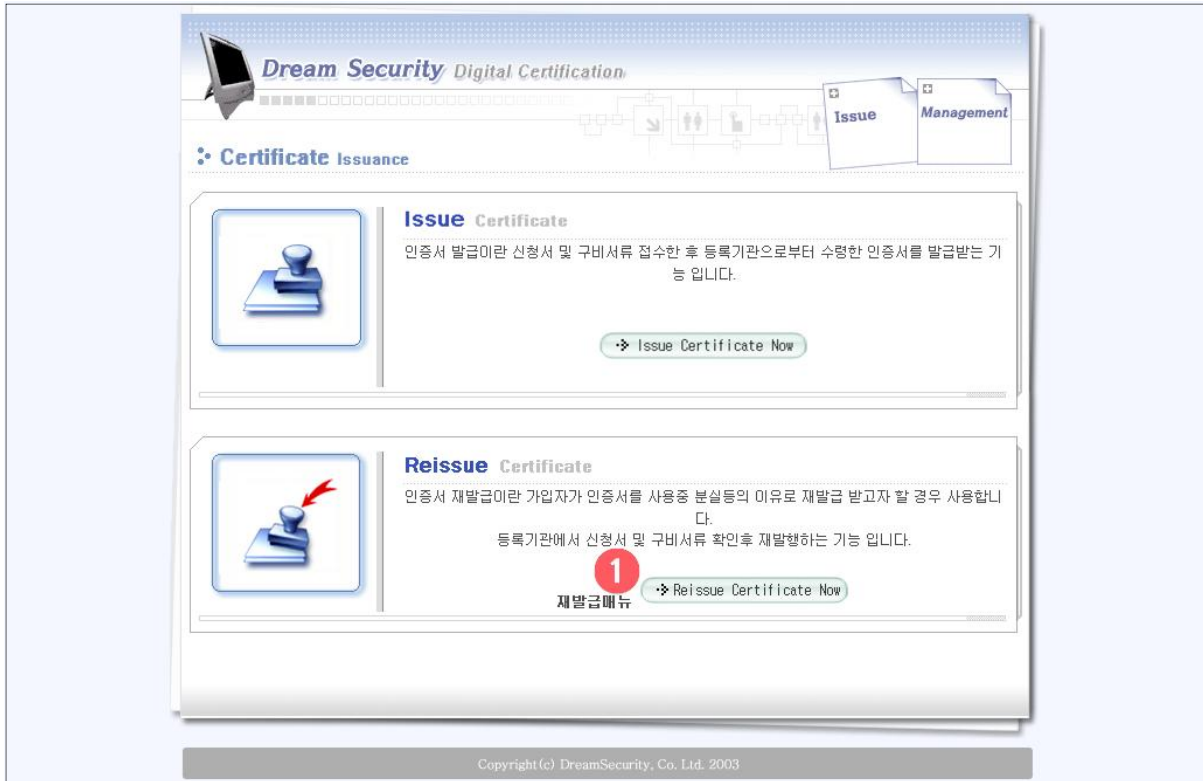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시스템 관리자  
02 - 6948 - 8700

**1** 인증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① 조합인증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

## 라. 조합인증서 재발급② -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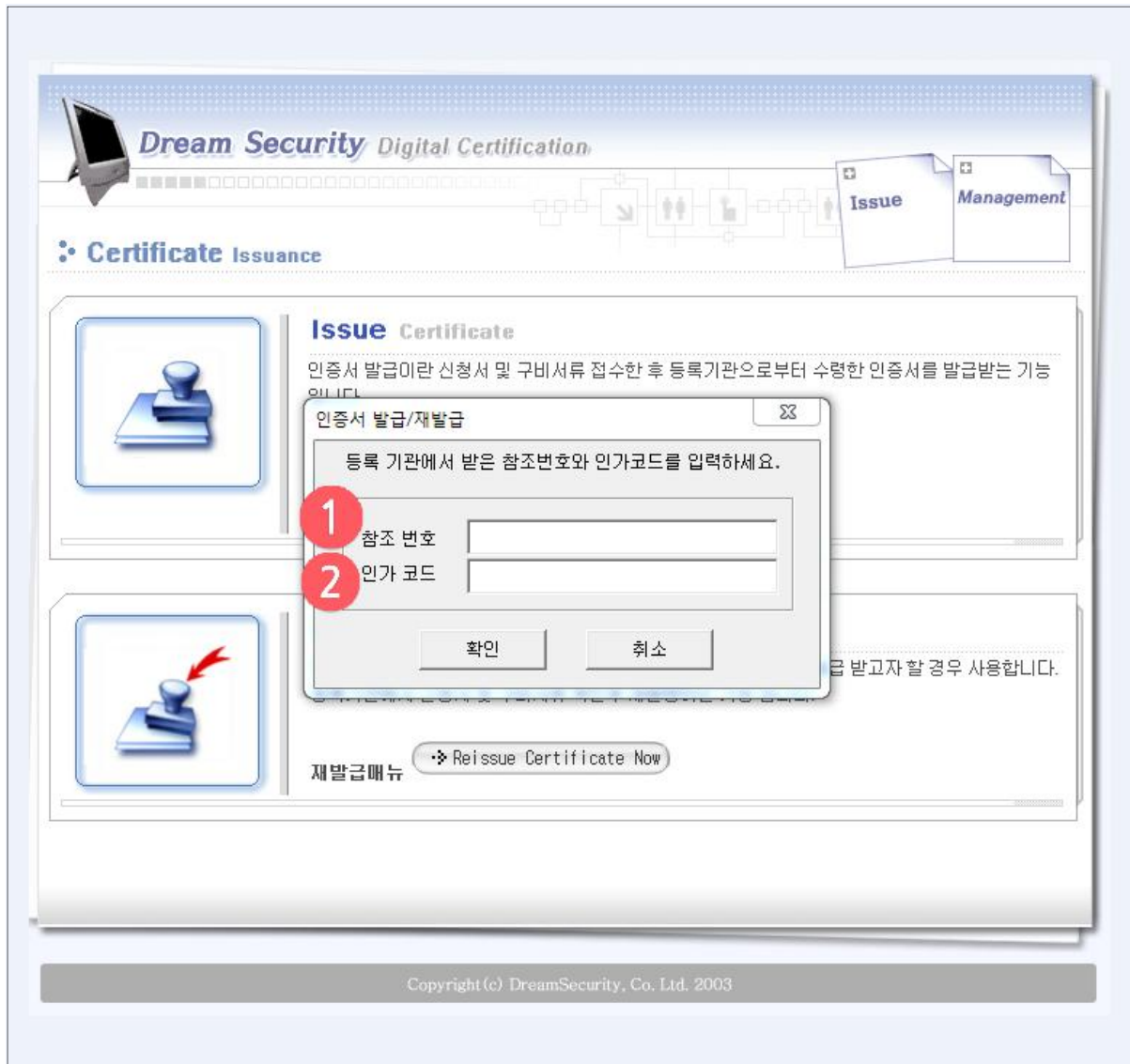
### ○ 조합인증서 재발급 메뉴



### ① 인증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재발급 메뉴 활성화

## 마. 조합인증서 재발급③ - 메인 화면

### ○ 조합인증서 재발급 메뉴



① 참조 번호 : 메일로부터 받은 참조 번호를 입력

② 인가 코드 : 메일로부터 받은 인가 코드를 입력

## □ 내 정보관리 - 메인 화면

○ 내 정보관리를 탈퇴 및 저장이 가능하며 가상계좌 조회가 가능

KPRC
<테스트>님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거래처관리
보담금관리
제정구조인이 평가

동영상매뉴얼
로그아웃

- 거래처관리
내정보관리

1
2

탈퇴신청
정보저장

**■ 회사정보**

회원사ID	[1404977]	기본신규 구분	[선택]
회원유형	[의무성 산자(공제회원)]	조합담당구분	[파트 사업본부]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수도권서부] (출고, 수입 실적 제출처 입력)	공단코드	
상호(국문) *	테스트		
사업자등록번호 *	214-82-14981	중복확인 *중번호	[0001]
사업자구분 *	<input checked="" type="radio"/> 개인 (대표자 생년월일: 860414) (예: 501231)	대표자(한글)	테스트입니다
업태	[업태]	종목	[종목]
업종	[화장품]		
사업장 주소 *	[137-888] [도쿄명찾기]		
팩스번호	[02-321-6543] (예: 02-123-4567)		
기업규모 *	연간매출액: 300 백만원 / 연간수입액: 10,001 백만원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수입액 기록
은행 *	[산업은행]	계좌번호 *	123456789
예금주 *	[예금주]		

**■ 담당자정보**

성명 *	test	부서/직급	부서	직급
주소	[137-888] [도쿄명찾기] [상동(사업장주소 동일)]			
이메일 *	test@test.com	회사전화번호 *	[02-111-2222] (예: 02-123-4567)	
휴대폰번호	[010-123-4567] (예: 02-123-4567)	팩스번호	[02-123-4567] (예: 02-123-4567)	
업무대행자 성명	[업무대행자 부개 시 상담가능 직원]	업무대행자 전화번호	[02-123-4567] (예: 02-123-4567)	

**■ 세무담당자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접수인)**

세무담당자 성명 *	세무담당자	상동(담당자정보 동일)		세무담당자 이메일 *	test@test.com
세무담당자 휴대폰번호 *	[010-222-3333] (예: 02-123-4567)				

**■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20141103144416556_002.jpg]	삭제	보기
통장사본	[02-123-4567]	[찾아보기...]	
첨부파일	[02-123-4567]	[찾아보기...]	

탈퇴신청
정보저장

**■ 가상계좌**

no.	회원ID	계좌구분	가상계좌	통장사본	현재사용	설정금액	비고
1	1404977	주계좌	27269570518193	[통장사본]	N	0	
2	1404977	부계좌	27269570518185	[통장사본]	N	0	

[ 2 / 2 ]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림로37길 18 (제이프러스빌딩 2F) TEL : 02-6948-8700  
 COPYRIGHT 2013 KPRC.CO.KR ALL RIGHT RESERVED

① 탈퇴신청 : 공제회원 탈퇴 신청

- 회원탈퇴서 서식[붙임자료 12.10] 작성 후 제출

② 정보저장 : 내 정보관리를 저장

## □ 출고·수입실적 제출 - 메인 화면

- 출고·수입실적 제출 조회 및 분담금산출내역서, 엑셀다운로드가 가능

출고·수입실적 제출

1. 년도: 2015, 분담금차수: 0, 의무생산자: 1404377, 테스트, 2. 조회

■ 입재정보

업체명	테스트	대표자명	테스트입니다	조합담당구분	파트 사업본부
사업자번호	214-82-14981	법인번호	960414	담당자	test
연락처		02-111-2222			

출고실적 입력: 연간출고실적주이

납부방법:  일시납부  분할납부, 매출액: 300, 백만원, 총수입액: 10,001, 백만원

3. 분담금산출내역서, 4. 엑셀다운로드

※ "품목명", "제조/수입" 수정이 필요 할 경우 품목 삭제 후 추가 바랍니다.

no.	<input type="checkbox"/> 삭제	*품목명	*제조/수입	*출고량/수입량 (단위:kg)	면제구분	등록자	등록일자	수정자	수정일자
1	<input type="checkbox"/>	유리병.(뚜껑태분리형)	제조	100,000		1404977	2015/09/04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외로37길 18 (제이프라스빌딩 2F) TEL : 02-6948-8700  
COPYRIGHT 2015 KP2C.CO.KR ALL RIGHT RESERVED

- ① 조회 조건 : 조회하려는 년도 및 분담금 차수를 선택
- ② 조회 : 출고·수입실적 제출 목록을 조회
- ③ 분담금산출내역서
- ④ 엑셀다운로드 : 출고·수입실적제출 목록을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 □ 분담금조회 - 메인 화면

- 분담금 조회(작년 재활용분담금 정산 및 올해 재활용분담금 산출 세부내역서) 및 인쇄가 가능하며 엑셀다운로드,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산출식 보기가 가능

137-08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길로37길 18 (케이프리스빌딩 2F) TEL : 02-6948-8700  
COPYRIGHT © 2015 KP2C Co., Ltd. ALL RIGHT RESERVED

- ① 조회 조건 : 조회하려는 년도 및 의무생산자를 선택
- ② 조회 : 분담금 산출 및 부과 내역을 조회
- ③ 인쇄 : 작년 재활용분담금 정산 및 올해 산출 세부내역서 출력
- ④ 엑셀다운로드 : 분담금 목록을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 ⑤ 메일발송 : 분담금 세부내역서를 메일로 발송
- ⑥ 산출식보기 : 재활용분담금 산출식

## □ 세금계산서조회 - 메인 화면

- 세금계산서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가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세금계산서조회' (Tax Invoice Search) page. At the top, there's a header with the KPRC logo and navigation tabs: '공지사항', '거래처관리', '분담금관리', and '재질구조간이 평가'. Below the header, there's a search form with a dropdown menu for '년도' (Year) set to '2015'. To the right of the dropdown is a '조회'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form is a table with columns: 'No.', '차수', '고지번호', '재활용분담금', '부가세', '고지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and '계산서출력'. The table is currently empty, showing a message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No data found). To the right of the table is an '엑셀다운로드' (Excel Download) button. The page also includes a left sidebar with navigation options like '분담금관리', '출고수입실적제출', '분담금조회', '세금계산서조회', and '출고실적예측'. At the bottom, there's a footer with contact information: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역로37길 18 (제이프리스빌딩 2F) TEL : 02-6948-8700' and 'COPYRIGHT 2019 KPRC.CO.KR ALL RIGHT RESERVED'.

- ① 조회 조건 : 조회하려는 년도를 선택
- ② 조회 : 세금계산서조회 목록을 조회
- ③ 엑셀다운로드 : 세금계산서조회 목록을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 7.1 분리배출 표시 제도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4조(분리배출 표시 제도)]
- EPR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7.2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포장재의 종류(A)	포장 대상품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팩</li> <li>○ 금속캔</li> <li>○ 유리병</li> <li>-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li> <li>○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료품류</li> <li>○ 농·수·축산물</li> <li>○ 세제류</li> <li>○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li> <li>○ 의약품 및 의약외품</li> <li>○ 부탄가스제품</li> <li>○ 살충·살균제</li> <li>○ 의복류</li> <li>○ 위생용 종이제품</li> <li>○ 고무장갑</li> <li>○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li> <li>※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li> <li>○ 상기 품목 이외의 제품</li> <li>※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자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li> </ul>	

가.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나. 단,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농약 및 유독물제품)는 제외

다. 그 밖의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도안 사용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4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아니어도 해당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는 해야 함

### 7.3 분리배출 표시 지정 신청·승인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포장재의 제조업자등이 자율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

####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절차】



#### □ 지정신청서 작성

가. 분리배출 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

나. 구비서류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서(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포장재에 한함)
- 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 □ 지정신청서 접수

-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
  - 동일품목을 여러 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함

- 지정신청서 제출 시 제출된 자료,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음
-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음

## 7.4 분리배출 표시 적용예외

○ [근거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기 준	방 법
분리배출 표시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표시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li> </ul> </li> <li>○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li> <li>○ 포장재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li> </ul> </li> <li>○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li> <li>○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li> <li>○ 랩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li> </ul> </li> </ul>
분리배출 표시 중 일괄표시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용기·포장재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일괄표시 부분) 표시생략 가능</li> </ul>

### □ 수입제품의 분리배출 표시



















-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음

## 7.5 과태료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1조(과태료)]
-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7.6 분리배출 표시 도안

-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 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권장
- 분리배출 표시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를 원칙으로 규정





구 분	분리배출 표시 도안					
페트						
플라스틱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HDPE	 LDPE	 PP	 PS	 PVC	 OTHER
캔류	 철	 알루미늄				
종이팩						
종이						
유리						

※ 상기 도안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http://www.keco.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 합성수지 재질 중 용기류는 플라스틱으로, 필름·시트형인 경우 비닐류로 구분

### □ 일괄 표시

-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모두 기재

구 분	구 성	도 안	
예시1	주요부분 : 페트 뚜껑 : HDPE 라벨 : PP	 뚜껑:HDPE 라벨:PP	 뚜껑:HDPE/라벨:PP
예시2	주요부분 : PP(용기형) 뚜껑 : HDPE 라벨 : 페트	 뚜껑:HDPE 라벨:페트 PP	 PP 뚜껑:HDPE/라벨:페트

## 8 포장공간비율 규정 안내

### 8.1 포장공간비율 규정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9조, 환경부령 제676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자원재활용법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8.2 적용 기준

- 포장공간비율 간이측정방법은 [붙임자료 13.12] 참조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종류			기 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분말커피류는 20% 이하)	2차 이내
		음 료	10% 이하	2차 이내
		주 류	10% 이하	2차 이내
		제 과 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체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 화 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 구 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 (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 약 외 품 류	20% 이하	2차 이내
	의 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비 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날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 표 비고 중 제7호를 제외한 기준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품의 종류		기 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종합제품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35% 이하 (향수는 제외한다)	2차 이내

- 가.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여 구성할 경우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장횟수를 3차로 할 수 있다.
- 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여 구성하고, 보호·고정 또는 상품가치 보존을 하기 위하여 완충재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포장공간비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다.
- 다. 내용물의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의 포장과 제품 가치가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톤 케이스는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 9.1 설립 근거

- 「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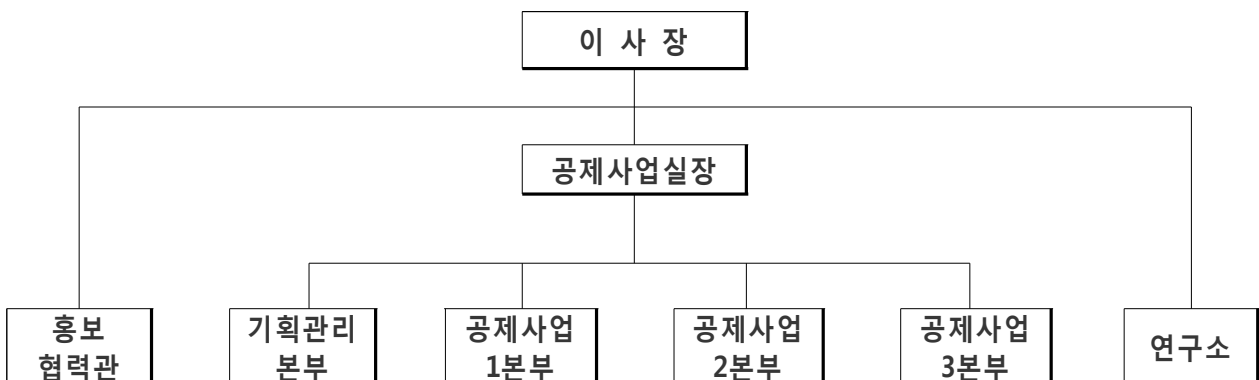
### 9.2 설립 목적

- (공제사업) 제품 또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 (공익사업) 자원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수행·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등

### 9.3 주요 기능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공제사업
- 재활용 촉진, 재활용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
-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등에 관한 홍보·교육 및 교류·협력
- 회원사, 유통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동이익 증진사업 등

### 9.4 조직 및 인원(1실 4본부 1협력관 1연구소, 정원 40명)



## 9.5 부서별 업무분장

부서	분장업무
<p>기획관리 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관리, 제 규정 종합관리</li> <li>○ 이사회·총회 운영, 인사·회계·노무·자산 관리</li> </ul>
<p>공제사업 1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의무량·의무율 산정, 분담금·지원금 단가 결정</li> <li>○ 분담금 산정·고지·징수 등 공제사업 총괄</li> <li>○ 서울·인천·경기서부지역 공제사업</li> <li>○ 페트·종이팩 포장재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발전</li> </ul>
<p>공제사업 2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사업 관련 제 규정 운영 및 관계법령 제·개정</li> <li>○ EPR품목 조정, 폐자원 분리배출·회수 등 EPR제도 및 정책</li> <li>○ 경기동부·강원·대전·세종·충청남북지역 공제사업</li> <li>○ 플라스틱·발포수지 포장재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발전</li> </ul>
<p>공제사업 3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사 관리·지원 및 재질별 분과위 구성·운영 총괄</li> <li>○ 의무생산자 교육, 재활용제품 수요촉진</li> <li>○ 부산·대구·광주·울산·전라남북·경상남북·제주지역 공제사업</li> <li>○ 금속캔·유리병 포장재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발전</li> </ul>
<p>홍보협력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계획 수립·시행</li> <li>○ 유관기관 교류 등 협력사업</li> </ul>
<p>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li> <li>○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li> </ul>

## 9.6 주요사업

- [근거 : 공제조합 정관 제6조(사업)]
-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홍보사업과 이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포장재의 제조·수입 및 회수·재활용에 관한 국내외 각종 정보 수집 및 통계작성
- 국내·외 회수·재활용 및 포장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교육 및 지원사업
- 회수·재활용 기술의 개발, 보급 및 수요 촉진을 위한 홍보 전시관 설립·운영 및 이와 관련한 사업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및 이에 따른 분담금 징수
-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폐자원 유통체계 구축 및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 지원
- 자원재활용법 제9조2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한 사업
-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관련 재활용사업 실적 등에 관한 유통지원센터와의 공동조사
- 자원재활용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관련 사업
- 자원재활용법 제38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회원사 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 위 사업들의 수행을 위한 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 9.7 공제조합 담당자 및 연락처

○ 대표전화 : 02-6948-8700 / 팩스 : 02-6948-8787~8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37길 18 2층

관할 지역	본부	담당자	직급	연락처	
서울, 인천, 경기서부	1본부	최형준	대리	전화번호	02-6948-8738
				E-mail	hjchoi127@pkg.or.kr
		조영화	주임	전화번호	02-6948-8739
				E-mail	yhcho@pkg.or.kr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기동부	2본부	송민준	주임	전화번호	02-6948-8755
				E-mail	mjsong@pkg.or.kr
		유준호	사원	전화번호	02-6948-8756
				E-mail	yjh@pkg.or.kr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3본부	박지성	주임	전화번호	02-6948-8772
				E-mail	pjs@pkg.or.kr
		오소라	주임	전화번호	02-6948-8774
				E-mail	sora@pkg.or.kr

※ 경기 서부 : 고양,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양주, 연천, 파주, 화성 등

※ 경기 동부 : 가평, 과천,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평택, 하남,  
여주, 양평, 포천

## 10.1 한국환경공단

구 분	주 소 (우편번호)	전화 / 팩스	관할 지역
본 사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22689)	☎ (032)590-4203~7,9, 4199,4238,5128 ☎ (032)590-4219	
수도권 동부 지역본부 제도운영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야탑동 342-1) 리더스빌딩 3층 (13496)	☎ (031)590-0653~9 ☎ (031)590-0660	가평, 과천,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평택, 하남, 여주, 양평, 포천
수도권 서부 지역 본부	제도 운영1팀 (포장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강서IT밸리 8층 (07566)	☎ (02)3153-0571~5,0567 ☎ (02)6008-3023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 (02)3153-0591~3 ☎ (02)6008-3023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본부	제도 운영1팀 (포장재) 부산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구포2동) (46634)	☎ (051)366-3762~4 ☎ (051)366-3779	부산, 울산, 경남
		☎ (051)366-3785 ☎ (051)366-3799	
대구경북 지역본부 제도운영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대천동 900-1) (42716)	☎ (053)580-7541,4 ☎ 0303-0944-7341 ☎ (053)580-7575	대구, 경북
충청권 지역본부 제도운영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둔산동 937번지) (35209)	☎ (042)939-2337,2342,3 ☎ (042)939-2349 ☎ 0303-3442-2349	대전, 충남, 세종
호남권 지역본부 제도운영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우산동 1576-2) (62359)	☎ (062)949-0314,5,0745 ☎ (062)443-0780	광주, 전남
강원지사 제도운영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운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 8층 (12191)	☎ (033)240-9542,7 ☎ (033)240-9501	강원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72-26(하북동) 정읍제2산업단지 16블럭 (56167)	☎ (063)530-0821~5 ☎ (063)532-6050	전북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율량동 743번지) KT 6층 (28328)	☎ (043)219-6442~4,7 ☎ (043)214-0763	충북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5층 503호 (63309)	☎ (064)723-6542 ☎ (064)721-5564	제주

## 10.2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구 분	전화 / 팩스	주 소 (우편번호)
본 사	T. (02)768-1600 F. (02)768-179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여의도동, 동성빌딩 2층) [우 07236]
수도권 지사	T. (031)785-8000 F. (031)785-809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로164번길 19 (석운동, 캐니빌리지) [우 13545]
중부권 지사	T. (042)526-2585 F. (042)526-2586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72 (괴정동, KT서대전지사 6층) [우 35291]
영남권 지사	T. (051)525-1870 F. (051)525-01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36 (금사동, KT 금사빌딩 2층) [우 46334]

## 10.3 기타 공제조합

구 분	전화 / 팩스	주 소 (우편번호)
한국농수산물활용 사업공제조합 www.koarc.or.kr	T. (02)6952-3270 F. (02)6952-3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8층 [우 07236]
한국유타일유공업협회 www.kloia.or.kr	T. (02)2068-6043 F. (02)2068-60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1001호 (우리벤처타운21 1001호) [우 07294]
한국전지재활용협회 www.kbra.net	T. (031)671-8312~3 F. (031)671-8314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어리실길 90-45 [우 17526]
대한타이어산업협회 www.kotma.or.kr	T. (02)551-1901~7 F. (02)551-19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910호 [우 06164]
한국조명재 활용 사업공제조합 www.klrc.co.kr	T. (02)712-8199 F. (02)707-04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3 석우빌딩 301호 [우 04376]

## 11.1 재활용의무대상

## Q 질문 1

윤활유용기나 페인트용기처럼 잔존 이물질 제거가 힘들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인데 EPR대상인가? 대상일 경우 실적 인정하는 기준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1호 “카” 목 및 “타” 목, 시행규칙 제13조]
- 윤활유나 페인트 용기의 이물질 제거 여부에 상관없이 시행령 제18조1항 “카” 목 및 “타” 목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한다)」의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일 경우에 EPR대상
- 시행규칙 제13조(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의거 재활용하였을 경우 실적이 인정됨

《참고 :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가 의무대행하는 제품의 포장재》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단, 합성수지 포장재로 한정)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따른 자동차
  - 「군수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 선박은 제외)
  -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

## Q 질문 2

수축용필름(진공포장용) 포장시에 발생한 자투리 포장재는 EPR대상인가요?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4호]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하며, 자투리는 포장재 및 EPR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람

**Q 질문 3**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환경부예규 제588호 제9조제1항]
- 환경부예규 제588호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 대상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일괄 제출할 수 있으나,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 기재하여 제출 바람

**Q 질문 4**

수출용으로 출고된 포장재 재활용의무대상 여부와 수출실적인증을 위한 필요서류는?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8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포장재는 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 후 수출(직접수출)하는 경우 서류
  - 수출면장 또는 관세 환급증명서류 등
- 재활용의무생산자 ㉠가 제조 후, ㉡에게 판매한 의무대상품을 ㉢가 수출하는 경우
  - ㉠는 ㉡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Local L/C) 및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서류 첨부

**Q 질문 5**

자동차의 의자나 각종 부품에 있는 비닐 커버도 EPR 대상인지 여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8조1호 “타” 목]

- 2014.1.1.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18조1항 “타” 목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포장재로 EPR대상

#### Q 질문 6

가구업체인데 가구를 납품한 후 포장했던 비닐을 다시 수거해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활용의무가 있는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8조1호 “타” 목]
- 2014.1.1.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18조1항 “타” 목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포장재로 EPR대상

#### Q 질문 7

출고량이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해와 되지 않는 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이 필요한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9조 별표4, 시행규칙 제14조]
- 시행령 제19조 별표4에 의거 업종에 따른 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재활용 의무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환경공단으로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

#### Q 질문 8

매출·수입액이 기준량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기업인데 매년 출고실적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고실적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 별표4, 시행규칙 제14조]
- 자원재활용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에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만, 매출·수입액이 업종별 규모미만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보고서등 증빙 서류를 제출

**Q 질문 9**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EPR의무대상 품목 여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9조, 제16조]
- 생분해성수지제품은 EPR의무대상이 아님.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거나 동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

**Q 질문 10**

절삭유, 오일류를 제조·수입한 의무대상자가 분담금을 내어야 하는 공제조합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타목]
- 절삭유, 오일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규정된 지정 폐기물로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카’ 목에 의한 윤활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14년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타’ 목의 제품의 포장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도 EPR 대상에 편입되었으므로,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여 절삭유, 오일유를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원재활용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의 인가를 받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됨
- 만약,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제6호에 따른 윤활유를 제조·수입하면 윤활유 용기(합성수지에 한함) 및 윤활유에 대한 분담금은 자원재활용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를 인가를 받은 ‘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 06-00-00에서 06-03-00 참조

• 06-01-01 윤활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함.)

• 06-01-02 연마유·절삭유

(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처리용유 및 비수용성 절삭유 등을 말함.)

• 06-03-00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

**Q 질문 11**

페인트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EPR 대상 여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 페인트 포장재로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할 경우 시행령 제18조제1호 ‘타목’에 해당되므로 EPR대상
- 다만,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포장재(금속캔 등)로 사용하였다면 EPR대상이 아님

**Q 질문 12**

포장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유통전문 업체에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제품을 납품할 경우 재활용의무 주체는?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9조]
- 주문자생산방식(OEM)의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주문자가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임
- 다시 말해,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다른 경우 제품의 상표소유권을 가진 사업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임

## 11.2 재활용부과금

**Q 질문 13**

재활용의무이행을 몰라서 5년간 지나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환경부예규 제588호 제24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EPR대상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여 징수
-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

**Q 질문 14**

생산자의 의무이행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재활용부과금 대상 여부?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 또는 직접 재활용 및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기 위한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생산자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징수 대상이 됨

### 11.3 출고·수입실적

**Q 질문 15**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서 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근거 :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직접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의무생산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 기재하여 일괄 제출이 가능
  - ※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의 경우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달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대행할 수 없으며 의무생산자가 직접 제출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첨부 서류는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임

**Q 질문 16**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시 출고량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4조]
-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국내소비용으로 출고된 제품·포장재별 중량을 기재하고, 수입업체의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제품·포장재별 중량을 기재하면 됨

## 11.4 과태료

### Q 질문 17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미 제출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36조, 제41조]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동법 제36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아니한 경우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11.5 제도이행

### Q 질문 18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 대상,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8조, 시행령 제24조 및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15조]
- 제출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른 공제조합과 동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공제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임(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다만,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분담금을 공제받기 위해 직접(또는 위탁) 회수·재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의무이행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원재활용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Q 질문 19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대상 및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생산자, 동법 제27조에 따른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재활용공제조합이 납부고지 대상이며,
-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

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하여 부과

### □ 자원순환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호]
  -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함.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함

### □ 재활용가능자원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2호]
  -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함

### □ 재활용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5호]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함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 재사용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6호]
  -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 □ 재생이용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7호]

-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 □ 재활용제품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9호]

-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함

## □ 재활용산업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1호]

-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함
  -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 자원재활용법 제31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 그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 □ 폐기물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2호]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함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 포장재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4호]

-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 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

## □ 1회 용품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5호, 시행령 제5조]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 재질·구조개선 대상 제품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7호]

-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함
-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 그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

## □ 재활용의무생산자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 □ 부분품

- 원형 그대로 제품에 부착되어 제품의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
- 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작성 시 해당 제품·포장재 무게는 대상품목이 「포장재군」일 경우 상품 전체의 무게가 아닌 수분 및 내용물을 제거한 부분품을 포함한 포장재의 단위중량(g) 기재해야 함

## □ OEM(주문자생산)제품

- 자기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 OEM제품은 주문자의 출고량에 포함하여 산출하며 OEM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에 주문자의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반드시 기재해야함

## □ 트레이

- 종이, 펄프, 플라스틱, 알루미늄박 등의 비교적 강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뚜껑이 없고 밑바닥의 얇은 접시 모양의 용기를 말함

## □ 블리스터 포장

- 플라스틱 시트를 가열 성형하여 1개 또는 복수개의 움푹 들어간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물품을 넣고 개구부를 종이, 판지, 플라스틱 필름이나 시트, 알루미늄박 등으로 덮고 주변부를 기재와 접착한 포장

## □ 자사브랜드

-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기호·디자인 등의 총칭을 뜻함

## □ 필름과 시트

-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써 두께가 0.25mm(250 $\mu$ m)까지를 필름이라고 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시트라고 함

※ 1m = 100cm = 1,000mm = 1,000,000 $\mu$ m = 1,000,000,000nm

## □ 첩 합

-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얇은 층을 겹쳐서 충분히 접착하여 일체화시켜 단층을 형성하는 가공법을 말하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라미네이트 필름이라고 한다.
- 라미네이트 필름 : 플라스틱 필름을 다른 종류의 필름, 종이, 알루미늄박, 직포 등과 접합시킨 필름

## 13.1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4)

업 종	규 모	
	매출·수입액 기준	출고·수입량 기준
1.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4.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5.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6.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와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8.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대형종합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11.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12.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 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비 고]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수입액 및 출고·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에는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3.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4. 제6호 및 제7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제4호 및 제5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은 제외한다.
5. 제7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제4호 및 제5호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농수축산물 상자를 말한다.
6. 제10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한다.
7. 제10호의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연간매출액”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9. “연간 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 포장재의 경우 규모미만의 사업자도 의무대상자에 속하지만, 재활용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규모미만 사업자도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는 하여야 함
  - ※ OEM(주문자생산)인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며,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판매업자·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 ※ 상기 영 별표4(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의해 재활용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영 별표6의 종류 및 재질별 출고 또는 수입량의 합산량을 기준으로 함. 단, 영 별표4의 8에 해당하는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별도 적용
  - ※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출고량)과 수입액(수입량)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하면, 재활용의무대상에 해당되고 그 의무량은 출고·수입량을 합산하여 산정. \* 「한국환경공단 EPR제도 업무처리지침」 참고

## 13.2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구 분		EPR대상 제품 · 포장재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부동액·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제품	<b>양식용부자</b>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전지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김발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 [비 고]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2. “음식료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3.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4. “세제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5. “화장품류”라 함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를 말한다.
6.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7. “살충·살균제”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8. “의복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9. “종이제품”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10. “고무장갑”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11.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12. “전기기기류 등”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포장재는 제외한다.(폐기 증명서류(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계량표 등)로 증빙 시에 한함)

### 13.3 장기 재활용목표율(2022년)

□ 포장재 재활용 의무율 추이(2013년~2017년)

품 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2년 (목표율)		
금속캔	철 캔	0.786	0.797	0.808	0.808	0.808	0.810	0.831		
	알루미늄캔	0.786	0.791	0.797	0.797	0.797	0.797	0.816		
유 리 병		0.760	0.760	0.763	0.763	0.763	0.734	0.793		
종 이 팩		0.341	0.346	0.348	0.350	0.350	0.321	0.360		
합성수지 포장재	PET 병	단일 재질	무색	0.806	0.812	0.818	0.818	0.818	0.800	0.830
			유색	0.806	0.812	0.818	0.829	0.818	0.800	0.830
	복합재질		0.806	0.812	0.818	0.818	0.830	0.830	0.830	
	발포합성수지 (PSP 제외)		0.781	0.790	0.795	0.807	0.807	0.807	0.807	
	단일재질 PSP		0.423	0.423	0.423	0.423	0.423	0.442	0.563	
	단일 · 복합 PVC		0.664	0.690	0.765	0.735	0.733	0.692	0.771	
	기타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류·트레이		0.800	0.806	0.821	0.833	0.796	0.808	0.845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600	0.603	0.628	0.652	0.653	0.666	0.729

※ 환경부고시 (제2017-240호, 2017.12.28.) 2022년도 제품 · 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

※ 환경부고시 (제2017-241호, 2017.12.28.) 2018년도 제품 ·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13.4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1.22.>

EPR([www.iepr.or.kr](http://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①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② 재활용 의무율	회수 및 재활용 계획						
			③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회수(인계자)		재활용(인수자)		
			직접	위탁	④ 수탁자 및 소재지	⑤ 방법	⑥ 수탁자 및 소재지	⑦ 방법 및 기준	

⑧ 회수·재활용 실적의 확인 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수·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재활용 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li> <li>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운반 계획을 말합니다) 1부</li> <li>「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li> </ol>	수수료 없음
------	--	--------

#### 작성요령

-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품목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 종이팩, 타이어).
- ②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적습니다.
-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방법에 O표를 합니다.
- ④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인계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⑤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상태(선별, 압축 등)를 적습니다.
- ⑥ 회수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⑦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가 재활용한 방법 및 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 적습니다.
- ⑧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3.5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1.22>

EPR([www.iepr.or.kr](http://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 (단위:kg,ℓ,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의무량	회수			재활용			회수·재활용실적
					업체명	회수량 (인계량)	방법	업체명	회수량 (인수량)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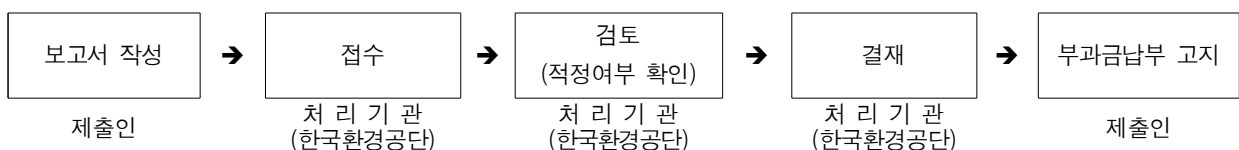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li> <li>「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1부</li> <li>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1부</li> </ol>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3.6 2018년 재질별 분담금 단가

[단위 : 원/kg, VAT별도]

구 분		재활용 의무율	분담금 단가
금속캔	철 캔	0.810	86
	알루미늄캔	0.797	133
유리병	유리병	0.734	36
종이팩	종이팩	0.321	231
페트병	단일무색	0.800	139
	단일유색	0.800	235
	복합재질	0.830	351
발포 합성수지	전자	0.807	65
	가공, 농산물, 의약품	0.807	74
	기타(EPP, EPE)	0.807	246
PSP		0.442	288
PVC		0.692	883
기 타 합 성 수 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8	96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0.666	307

※ 공제조합 홈페이지 [www.pkg.or.kr](http://www.pkg.or.kr) ⇒ 자료실 참조

### 13.7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구 분	기재 예시	시스템 코드	출고 단위	구 분	기재 예시	시스템 코드	출고 단위
포장재	종이팩	[0110]	kg	제품	윤활유	[0710]	L (리터)
	유리병(뚜껑테일체형)	[0210]	kg		타이어	[0610]	kg
	유리병(뚜껑테분리형)	[0220]	kg		형광등	[0910]	개
	철캔(뚜껑일체형)	[0310]	kg		수은전지	[0510]	g
	철캔(뚜껑분리형)	[0320]	kg		산화은전지	[0520]	g
	알루미늄캔(뚜껑일체형)	[0330]	kg		리튬전지	[0540]	g
	알루미늄캔(뚜껑분리형)	[0340]	kg		니켈카드뮴전지	[0530]	g
	PET병-무색 단일재질	[0410]	kg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0550]	g
	PET병-유색 단일재질	[0411]	kg		니켈수소전지	[0560]	g
	PET병-복합재질	[0412]	kg		수산물 양식용 부자	[1010]	kg
	발포합성수지(PSP제외)	[0420]	kg		※ 리튬전지 : 1차 전지만 해당 ※ [ ] 안의 숫자는 EPR시스템에 입력 시 적용하는 품목코드		
	단일재질폴리스티렌페이퍼(PSP)	[0430]	kg				
	단일복합재질 PVC	[0440]	kg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트레이	[0450]	kg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0460]	kg				
	전기기기류의 필름·시트형 포장재	[0470]	kg				
	윤활유 부동액 브레이크액의 용기류	[0480]	kg				

## 13.8 참여약정서 [별지 제1호서식]

〈공제회원〉

### 참 여 약 정 서

당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과 사업운영규정 및 회원관리규정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조합에 참여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 1. 공제조합의 의무

- 가. 법 제16조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 나. 회수·재활용의무이행 계획(변경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 제출 대행

#### 2. 공제회원의 의무

- 가. 법정 서류의 작성·제출 및 기록 보존
  - 품목 및 종류별 출고·수입실적서 작성·제출(기한: 매년 4월 15일)
    - ※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는 당해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제조·수입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기록·보존
- 나. 공제조합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 다.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 공제조합에 통보
- 라. 품목 및 종류별 재활용분담금의 납부

#### 3. 기타 약정사항(동의 등)

- 가. 당사(법인/업체 명)는 공단 또는 공제조합에 제출한 품목 및 종류별 출고·수입실적 자료를 공단과 조합이 상호간 교환하거나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나. 본 약정의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별도의 해지의사를 문서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 약정서는 매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다. 출고·수입실적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 13.1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9호, 2015.8.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4. “무표시포장재“라 함은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단계에서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등 중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미만 사업자를 포함하되, 영 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2015년6월30일까지 분리배출 표시를 아니 할 수 있다)
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포장재 : 해당 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 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 마다 분리배출 표시가 어려운 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 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첩합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도포 또는 첩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한 복합재질포장재의 재질표시는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의 표시재질 중 “OTHER“로 표시한다.
7.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8.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9.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표시포장재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함)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②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49호, 2015.8.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관련)

###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재질의 예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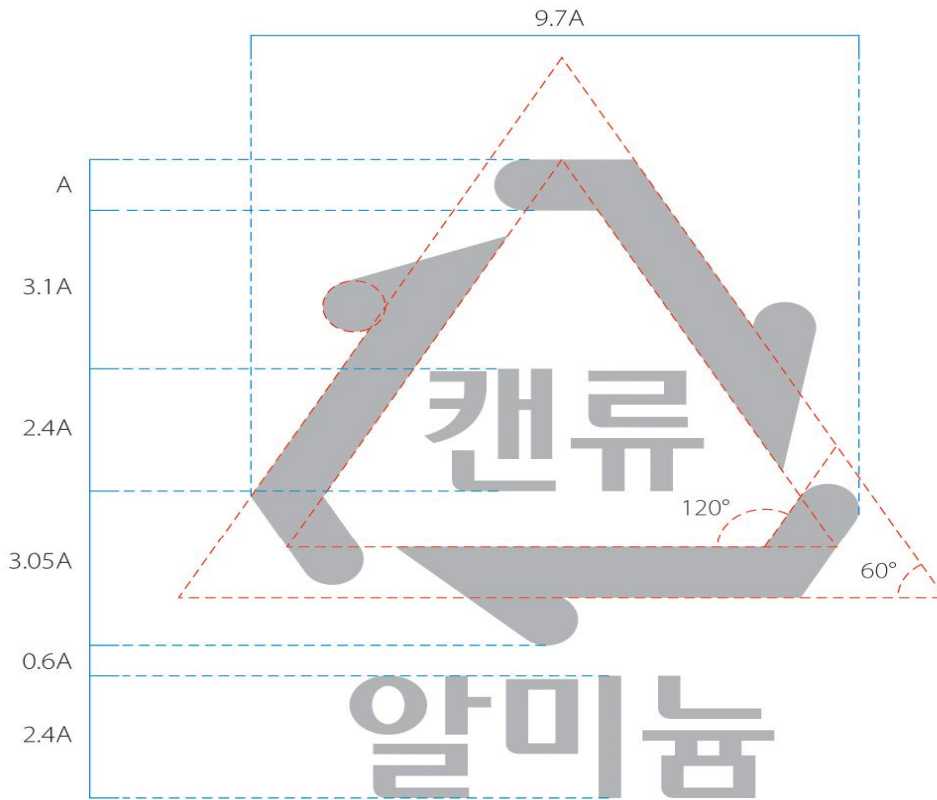
###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페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플라스틱의 재질구분의 "OTHER"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부착된 것을 의미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 3. 도안 작도요령



심벌마크의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으로 한다.

-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종이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 13.12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6-122호, 2016.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재활용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한다.
2. “종합제품“이라 함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ml 또는 30g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과 함께 포장된 제품은 종합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포장용적“이라 함은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용기 안치수인 길이(長), 폭(幅), 높이(高)를 실측한 용적을 말한다.
4.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길이(長)“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긴 길이를 말한다.
5.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폭(幅)“이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짧은 길이를 말한다.
6.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높이(高)“라 함은 덮개를 개폐함으로써 제품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포장용기의 표면에 높이방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에는 표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7. “제품체적“이라 함은 제품이 차지하는 체적(제품이 부득이하게 차지하는 가상 체적을 포함한다)으로서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액상 및 분말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8. “필요공간용적“이라 함은 제품 개개의 보호와 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용적으로서 제품의 보호와 완충을 위하여 허용하는 일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9. “포장공간용적“이라 함은 포장용적에서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을 공제한 부분의 용적을 말한다.
10. “포장공간비율“이라 함은 포장용적에 대한 포장공간용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11. “포장용기(또는 상자) 두께“라 함은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두께를 말한다.
12. “포장횃수“라 함은 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횃수를 말한다.
13. “첩합(라미네이션)“이라 함은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목적으로 2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
14. “수축포장“이라 함은 물품을 1개 또는 여러 개로 합하여 수축필름을 덮고, 이것을 가열 수축시켜 물품을 고정 유지하는 포장방법을 말한다
15. “도포(코팅)“이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물·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캘린더링·압출·담금(디핑)·분사(스프레이)·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장재질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등 염소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포장재에 대한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1의 방법에 따른다.

**제4조(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①규칙 제4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2의 방법에 따른다.

② 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에 5를 뺀 값으로 한다.

③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포장횃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날개 단위제품의 포장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횃수
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받침접시에 대한 포장횃수
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횃수 (다만, 단위제품 자체로는 단일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횃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1]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질 여부 간이측정방법(제3조 관련)

### 1. 간이측정

가. 측정 대상 포장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시료를 메탄오나트륨 염소기 진단 용액에 한 시간 이상 침지한 후 시료의 갈색 변색을 관찰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등 염소계 합성수지)여부를 판단하거나, 불꽃에 접근시킨 후 이 시료의 연소특성을 관찰하여 판단한다. 연소특성은 인쇄상태 등에 따라서도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부위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질의 연소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열가소성 : 불꽃에 시료를 가까이 하면 오그라들면서 불꽃으로부터 분리됨
- 2) 착화성 : 불꽃에 시료를 가까이 하여도 불이 쉽게 붙지 않음
- 3) 자기 소화성(自己消火性) : 불꽃에서 시료를 멀리하면 저절로 꺼짐
- 4) 불꽃의 특징 : 검은 연기를 내며 타고, 불꽃 색은 황색이며 아랫부분은 녹색을 띠
- 5) 연소 가스의 냄새 : 염소 성분 특유의 특 쏘는 냄새가 남
- 6) 연소 후 생성물 :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연소 후 불규칙한 검은색 덩어리가 남음
- 7) 불꽃반응 : 시료를 구리(銅) 선에 묻히거나 감아서 불꽃의 가장 윗 부분에 얹으면 불꽃색이 녹색을 띠

### 2. 유사재질과의 상호비교

가. 연소특성 관찰을 통하여 시료 재질이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질로 간주되더

라도, 유사재질과의 연소특성을 상호비교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질의 연소특성은 다음과 같다.

재 질 종 류	착화성	자기 연소성	불꽃의 특징	냄새	연소 후 생성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PVC)	어려움	금방 꺼짐	황색, 아래쪽은 녹색	염소성분 특유의 특 쏘는 자극적인 냄새가 남	부스러지기 쉽고 불규칙한 검은 덩어리
나일론 (PA)	다소 어려움	금방 꺼짐	청색, 끝이 황색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약하게 남	단단하며 다갈색~회색의 불규칙한 덩어리
폴리프로필렌 (PP)	다소 어려움	계속 타 들어감	끝이 약간 황색, 아래쪽은 청색	양초(파라핀) 탈 때 나는 냄새가 매우 약하게 남	단단한 회색 덩어리
폴리에틸렌 (PE)	쉬움	계속 타 들어감	끝이 황색, 아래쪽은 청색	양초(파라핀) 탈 때 나는 냄새가 남	단단한 회색 덩어리
폴리스티렌 (PS)	쉬움	계속 타 들어감	황색, 검은 연기, 검댕 발생	스티로폼이 탈 때 나는 스티렌 특유의 방향	단단하고 검은 덩어리
아크릴 수지	쉬움	계속 타 들어감	황색	불고기 탈 때와 다소 비슷한 아크릴 특유의 냄새	단단하고 불규칙한 검은 덩어리
비닐아세테이트수지 (PVAc)	쉬움	계속 타 들어감	암황색, 불꽃이 튀, 검은 연기	빙초산과 비슷한 시큼한 냄새	약간 단단하고 불규칙한 검은 덩어리
폴리비닐알콜 (PVA)	쉬움	계속 타 들어감	황색, 아래쪽은 청색	PVA가 탈 때 나는 특유의 달콤한 냄새	단단하며 다갈색~흑갈색 불규칙한 덩어리
폴리에스테르 (PET)	쉬움	계속 타 들어감	황색, 불꽃이 튀, 검은 연기	벤젠과 비슷한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매우 약하게 남	단단하고 검은 덩어리
폴리카보네이트(PC)	쉬움	서서히 꺼짐	황색, 약간씩 불꽃이 튀며 검은 연기	방향족과 비슷한 특유의 냄새가 매우 약하게 남	단단하며 다갈색~흑갈색 덩어리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수지 (EVA)	쉬움	계속 타 들어감	황색, 검은 연기	빙초산과 비슷한 시큼한 냄새가 매우 약하게 남	단단하고 불규칙한 검은 덩어리

<비고>

- 착화성 : 불꽃에 시료를 가까이 했을 때 시료에 불이 붙기 쉬운가?
- 자기연소성(自己燃燒性) : 시료에 불이 붙은 다음 불꽃에서 시료를 멀리할 때 계속 타 들어가는가(자기 연소) 또는 꺼지는가(자기 소화)?
- 불꽃의 특징 : 불꽃 모양, 불꽃 색, 연기·그을음의 발생 여부는?
- 연소 후 생성물 : 타다가 꺼진 부위의 모양·색, 재의 상태 등은 어떠한가?

## [별표 2]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

### 1. 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 확인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령으로 제품의 종류 및 특성 등을 확인한 후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 1-1. 대상제품 종류의 확인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려는 대상제품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중 어떠한 제품군에 속하는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대상제품이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모두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종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 1-2. 대상제품이 제품의 특성상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 제품인 지 여부

가. 제품의 특성상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이라 함은 제품이 접촉되거나 혼합되어 제품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로 포장된 두 개 이상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위제품을 말한다.

나. 이 경우, 날개의 구성품은 하나씩 셀 수 있고 각각 유용성을 가진 고형물 형태의 제품(예 : 날개 포장된 껌, 사탕, 초콜릿, Tea-bag, 색깔 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 뿐만 아니라 용도 및 유형별로 포장하여 함께 포장된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제품으로서 단위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를 연성포장재로 포장한 제품(예 : 포장된 분말·액상스프,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 조립용 부속품 포장)을 포함한다.

다. 날개의 구성품은 개개품 자체를 대상제품으로 고려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 1-3.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

가.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Tea-bag차 포장된 홍차·녹차 등을 대상제품으로 고려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1-4.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종합제품) 하였는지 여부

가.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25%) 및 포장횟수(2차 이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즉, 종합제품에서 포장된 최소판매 단위 제품은 제품포장 자체를 제품체적 측정의 기준으로 간주한다.

다. 이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개의 제품에 대하여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개개의 제품이 포장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제품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체적에 필요공간용적만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1-5. 제품의 보호 등을 위한 받침접시 사용여부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6. 대상제품이 단위제품으로서 2차 이상 포장여부

병, 캔 등으로 1차 포장한 상품을 상자 등으로 2차 포장한 단위제품의 경우에는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여야 한다.

1-7. 분말제품(분말 세제류 등)의 제품체적 측정

다져진 분말 제품이 점검시점에서 공극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메스실린더로 옮겨 부어 제품체적을 측정한다. 이때 메스실린더 내에서 제품이 다져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측정하고, 반복 측정한 결과값의 차이가 5% 이내인 3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제품체적으로 한다.

1-8.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필요공간용적 가산

제품의 보호, 보존을 위하여 완충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완충·고정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인정하여 외접하는 최소한의 정육면체의 체적에 가로(장), 세로(폭), 높이(고) 방향에 대해서 각각 10mm(5mm×2) 씩을 더하여 가산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다만, 병이나 통 형태의 성형 용기 내부에 완충 또는 고정재가 사용

된 경우에는 높이 방향에 대해서만 10mm를 더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가산 제품체적}(V) &= (a+10) \times (b+10) \times (h+10) \quad (\text{일반제품}) \\ &= \pi \times (a/2) \times (b/2) \times (h+10) \quad (\text{병/통 형태 용기}) \end{aligned}$$

1-9. 사용상 의도한 첨가물이 필요한 포장제품의 제품 체적 범위(우유를 붓는 팬 케이크, 1회용 시리얼, 컵라면, 염색약 혼합제제 등)

가. 제조사에서 설정한 첨가물을 혼합하는 적정 수준까지 제품체적으로 간주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되, 그 내용물(라면+스프류 등)은 이러한 가상 제품체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또한 포장 내에서 조리에 의해 제품이 완성될 경우에는 조리된 제품의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간주한다. 다만, 컵라면과 같이 뜨거운 물을 첨가하여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사에서 설정한 첨가물을 혼합하는 적정수준에서 제품의 높이방향으로 3c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며, 컵밥과 같이 조리 과정에 끓어오름 등에 의해 부피가 팽창한 뒤 조리 후 체적이 감소하는 제품은 실제로 조리하여 팽창하는 수준까지 제품체적으로 간주한다.

1-10. 필로우포장 형태 등의 음식료품류 공기충전 포장 측정

가. 포장용적은 직경 5.8 ~ 6.0 mm, 무게 0.15 g 이하의 플라스틱 구슬들을 사용하여 실링부분이 닫힐 수 있을 때까지 충전하여 필로우 포장의 최대부피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이때, 실험기구는 2000ml의 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나. 제품체적은 제품의 상단부분을 개봉하여 메스실린더(2000ml)와 제품의 개봉입구가 맞닿게 하여 제품을 자연낙하 시켜 측정한다. 이때, 손으로 메스실린더 하단부를 가볍게 2~3회 두드려 준다. 다만, 제품의 길이, 형태, 무게 등이 일정한 경우 개별 측정하여 산출한다.

1-11. 컵 포장 음료 및 가공식품의 포장 자동화 공정기술에서 최소 필요공간을 고려한 제품 체적 범위  
컵 커피나 주스, 떠먹는 요구르트와 같이 컵 포장형태의 음료 및 가공식품으로 자동화 포장공정에서 내용물의 넘침 및 포장마감의 불량 등 제품의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필요공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품의 경우 컵 용기에 충전된 내용물의 표면에서 높이방향으로 10 mm 가산한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간주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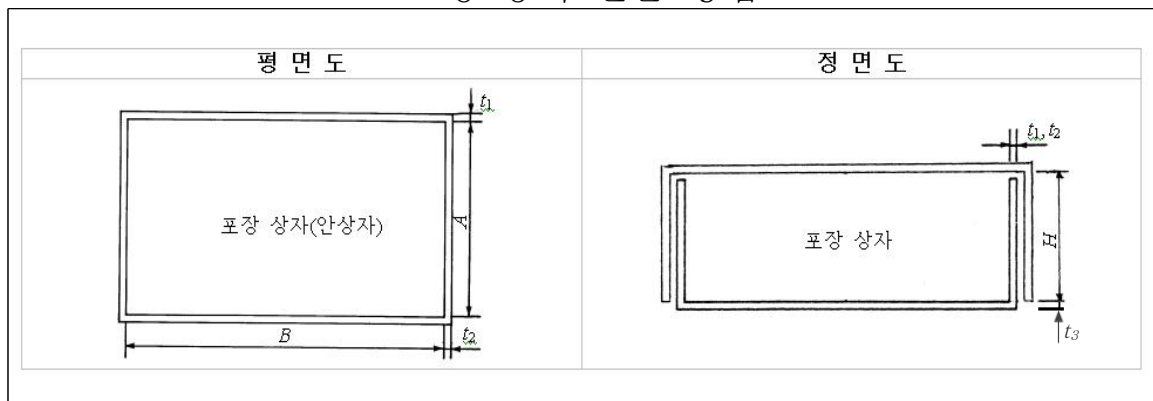
1-12. 음료용 가공식품류 카톤팩 포장 및 소량의 병 포장 제품에 대한 포장용적 측정  
우유 및 유가공 음료, 주스와 같은 음료류 또는 음료용 가공식품의 포장용적을 측  
정하는 경우 카톤팩 형태 포장의 개봉구를 형성하는 상단부 침탑모양의 접힘구조  
(Gable Top)와 소량(400ml 미만)의 병 포장 제품의 병구 부분은 제품의 위생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 부분임을 고려하여 포장용적에서 제외한다.

## 2.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포장용적,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을 측정하여  
포장공간 비율을 산출한다.

### 2-1. 포장용적

#### <포장 용적 산출 방법>



가. 포장용기(상자)의 안치수를 계측하여 용적을 구한다. 간단히 아랫상자의 내치  
수를 안치수로 간주하여 측정하기도 하지만, 윗상자의 안쪽 높이와 아랫상자의  
바깥쪽 높이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윗상자의 내부 윗면에서 아랫상자의 내부  
아랫면까지 길이를 높이로 본다.

나. 포장용기(상자)의 두께가 10mm를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 부분을 포장용적에  
포함시킨다. 또한 포장용기의 두께가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초과하는 두께는 포장용적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다만, 발포스티렌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용기(상자) 두께가 제품의 보냉을 위하여 30m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장용적에 포함시킨다.

$$\text{포장용적}(C) = \{A + 2(t_1 - 10)\} \cdot \{B + 2(t_2 - 10)\} \cdot \{H + 2(t_3 - 10)\}$$

다. 종합제품의 포장에서 포장 상자의 두께가 10mm 이하인 경우 포장상자의 앞 뒷면 및 양 옆면에(윗면과 아랫면은 제외) 한하여 두께가 10mm에 미달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의 60%를 포장용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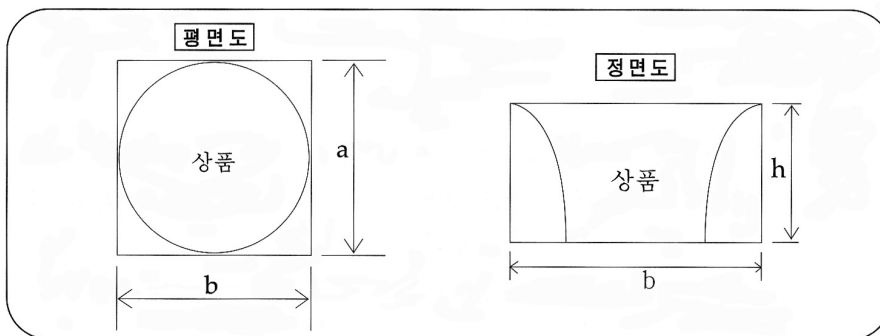
$$\text{포장용적}(C) = \{A-2(10-t_1)\times 0.6\}\cdot\{B-2(10-t_2)\times 0.6\}\cdot H$$

라. 포장상자의 두께가 10mm 이하인 단위제품의 경우는 실측한 포장용기의 안 치수를 계측하여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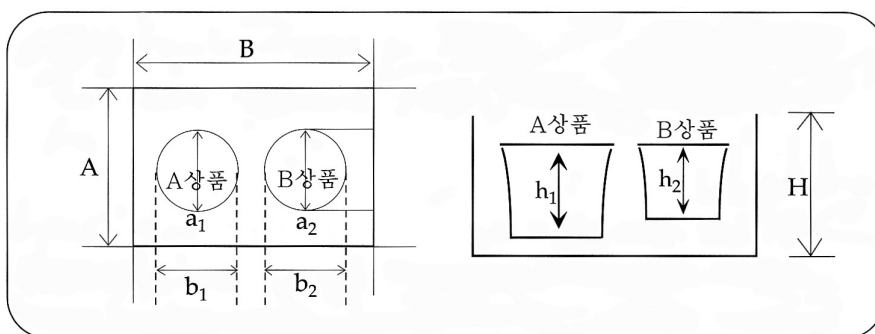
$$\text{포장용적}(C) = A\cdot B\cdot H$$

## 2-2. 제품체적

가. 제품체적이란 단순히 대상제품의 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체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상하좌우가 바뀌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최소의 최적을 구하기 때문에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본다.



나. 2개 이상의 제품 또는 부속품을 함께 포장했을 경우 각각의 체적을 구한 후 더한 값을 제품체적의 합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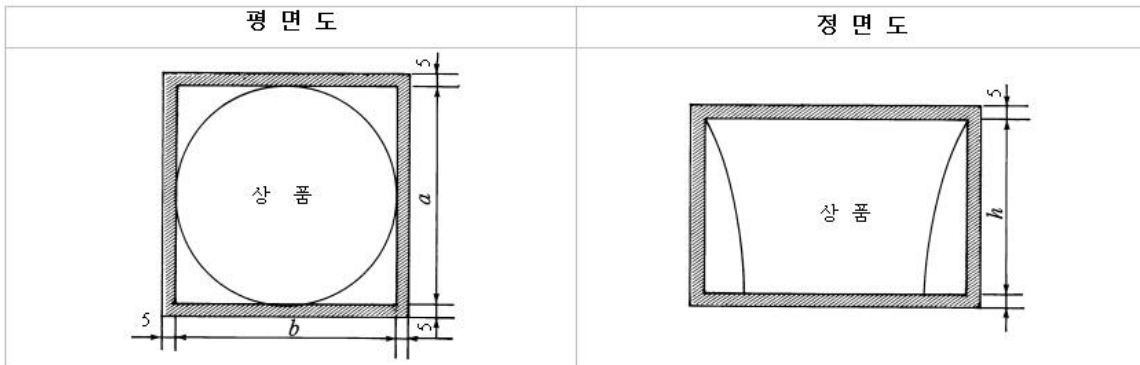
다. 완구나 인형류 등 여러 개의 부품이 포장용기(상자)내에 일정한 상태로 상호 접촉하여 자연적치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상태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제품을 하나의 제품덩어리로 가상하여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본다. 다만, 제품의 포장용기

(상자)가 개봉 이후에도 제품 보관용으로 상시 사용되고 제품 보관시의 편리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 원통형 포장의 블록 보드게임 제품) 제품의 보관 상태를 고려하여 제품체적을 측정한다.

- 라. 병, 상자, 캔 등에 포장된 액체류, 분말류, 입자(알약과 같은 정제류 등) 등 충전제품의 체적은 실제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체적을 구하여 제품체적으로 한다. 이 때, 계량도구, 제습제 등 고정된 형태의 제품이 혼입되어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체적을 구한다.
- 마. 시트 및 필름 등의 포장재를 사용하여 접착봉합한 제품은 접착봉합 폭의 최대 10mm까지만 제품체적으로 인정한다.
- 바. 블리스터 포장 등 대지, 받침판 등을 사용한 제품은 접착 부위 또는 부풀어 있는 곳으로부터 최대 10mm까지만 제품체적으로 인정한다.
- 사. 끈이나 줄이 있는 제품은 제품과 끈, 줄 등을 각각 측정하고, 끈, 줄은 펼친 상태로 측정한다.

2-3. 필요공간용적

가. 제품의 보호, 보존을 위하여 완충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외접하는 최소한의 정육면체의 체적에 일률적으로 5mm 두께의 가상공간을 두어 완충·고정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인정하여 준다. 이 여유 공간이 필요공간용적이다.



$$\text{필요공간용적 (V')} = (a + 10)(b + 10)(h+10) - a \cdot b \cdot h$$

- 나. 병이나 통 형태의 성형 용기 내부에 완충 또는 고정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높이 방향에 대해서만 10mm 두께의 가상공간을 인정한다.
- 다. 두께 1mm이하의 평면 속지 및 테이프, 접착제류 등에 의한 고정은 완충·고정재로 보지 않으며 필요공간용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크기가 다른 여러 제품을 상호 접촉시켜 하나의 완충 또는 고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완충 및 고정이 이루어지는 제품과 그 방향에 대해서만 5mm를 더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 2-4. 포장공간비율 산출

포장공간비율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단, 산출결과가 “0이하” 일 때는 “0”으로 처리한다.

$$\text{포장공간비율(\%)} = \frac{C - (V + V')}{C} \times 100$$

여기서 C : 포장용적, V : 제품체적, V' : 필요공간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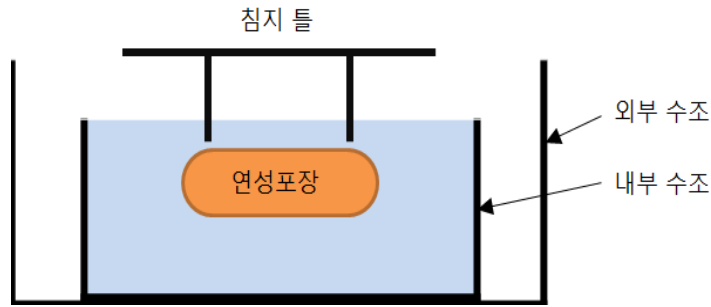
#### 2-5. 측정기구 및 측정방법

가. 포장용적, 제품체적 산출을 위한 치수측정은 KS B 5203의 버니어 캘리퍼스 및 KS B 5246의 금속제 곤은 자를 사용하여 밀리미터 단위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고, 각 부위별(가로, 세로, 높이 등) 3회 측정치의 평균치를 구하여 포장용적 또는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용기(병 종류, 블리스터 포장, 연성포장 등)의 체적(또는 용적) 측정은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용량 1000 ml (필요시 2000 ml)의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 용기에 물 또는 직경 5.8 ~ 6.0 mm, 무게 0.15 g 이하의 플라스틱 구슬들을 충전하여 그 부피를 측정함으로써 포장 용적을 측정한다. 다만, 이때 충전물질의 자중에 의해 용기의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래 부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측정하고, 반복 측정한 결과값의 차이가 5% 이내인 3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포장용적으로 산출한다.

다. 튜브형 포장을 포함한 연성포장 포장용적 측정은 이중 구조의 수조(필요시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용량 1000 ml 혹은 2000 ml의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를 이용한 부피 대체법을 적용하여 내부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틀을 사용하여 시료를 완전히 침지시켜 외부 수조로 넘친 물의 부피를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용기의 내부체적을 산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포장재 자체 부피 측정하여 차감한 결과값의 차이가 5% 이내인 3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포장용적으로 산출

한다. 이때 시료의 침지 과정에서 틀의 침수에 따른 부피는 차감하여 보정한다.



### 3. 포장용적 및 제품체적 산출시 중점 고려사항

동일한 제품체적을 가지는 제품일지라도 완충·고정재의 사용여부뿐만 아니라 포장 방법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공간용적은 변화되므로 올바른 포장공간비율 산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3-1. 포장용적 산출시 고려사항

포장용기의 두께가 10mm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10mm를 초과하는 경우 두께 초과부분은 포장용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 (2) 10mm이하인 종합제품은 앞뒷면 및 양 옆면에 한하여 미달되는 두께의 60%를 포장용적에서 제외하고, 단위제품은 실측한 안치수만으로 포장용적을 산출한다.

#### 3-2. 제품체적 산출시 고려사항

가. 제품이 단위제품인지 종합제품인지 검토한 후 만일 대상제품이 단위제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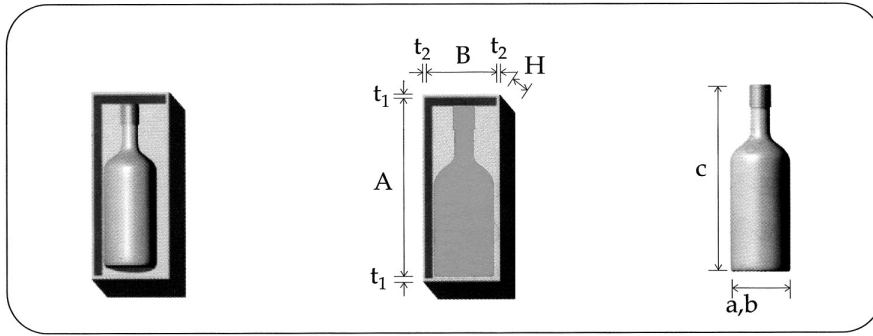
- (1)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능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대상제품이 완충·고정재를 사용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만일 대상제품이 완충·고정재를 사용하였다면, 구성제품의 제품치수(길이, 폭, 높이)에 일률적으로 10mm(5mm×2)씩을 가산하여 제품체적을 구한다.

#### 4. 공간비율산출 실례

공간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은 대상제품이 단위제품 혹은 종합제품인지 그리고 완충 고정재 사용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실례를 들어 계산해보도록 하자.

##### 4-1. 단위제품(완충고정재를 사용한 경우)



가. ㉠사에서 생산되는 용량 700mL 위스키 1개는 종이 완충고정재와 함께 포장되어 주류 단위제품에 해당되므로 포장공간비율 10%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대상품목은 포장용기의 두께가 10mm이상이고 종이 완충고정재가 사용된 단위제품이므로 포장용적 및 제품체적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용적 : 포장상자의 두께가 10mm를 초과하였으므로 10mm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장용적에 포함시킨다.

$$\text{포장용적}(C) = \{A + 2(t_1 - 10)\} \times \{B + 2(t_2 - 10)\} \times \{H + 2(t_3 - 10)\}$$

A : 포장용기의 길이, B : 폭의 길이, H : 높이의 길이

(2) 제품체적 : 완충고정재를 사용하였으므로 제품의 둘레(가로, 세로, 높이)에 외접하여 일률적으로 5mm 두께의 공간을 필요공간용적으로 인정하여 제품 치수 길이, 폭, 높이에 10mm(5mm×2)씩을 더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text{제품체적}(V) = (a + 10) \times (b + 10) \times (c + 10)$$

a : 제품의 길이, b : 제품의 폭, c : 제품의 높이

다. ㉠사에서 생산되는 주류제품의 공간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측정항목 및 실측 치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용적을 구하기 위한 항목 및 치수

(가) 포장용기의 두께 : 10.5mm

- (나) 포장용기의 길이 : 260.0mm
- (다) 포장용기의 폭의 길이 : 95.0mm
- (라) 포장용기의 높이의 길이 : 95.0mm
- (마) 포장용적을 구하는 식에 의하여 포장용적 C는

$$\begin{aligned} \text{포장용적}(C) &= \{266+2(10.5-10)\} \times \{95+2(10.5-10)\} \times \{95+2(10.5-10)\} \\ &= 2,405,376\text{mm}^3(1) \end{aligned}$$

(2) 제품의 용적을 구하기 위한 항목 및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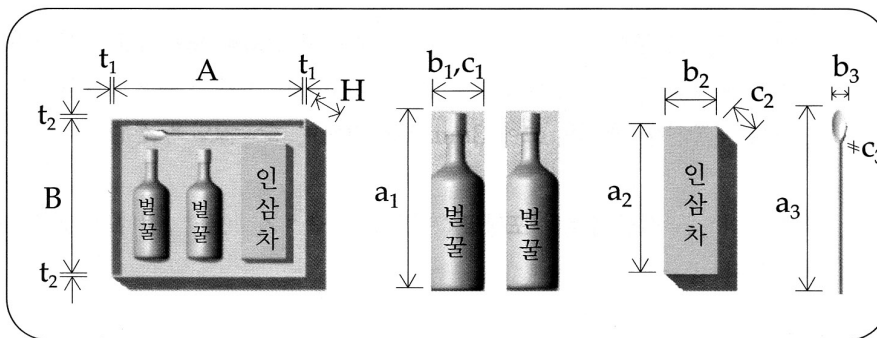
- (가) 위스키의 길이 : 256.0mm
- (나) 위스키의 폭의 길이 : 82.0mm
- (다) 위스키의 높이의 길이 : 82.0mm
- (라) 제품체적(V) = (256+10)(82+10)(82+10)=2,251,424.0mm<sup>3</sup> (2)

(3) 포장공간비율은

$$\begin{aligned} &= \frac{\text{포장용적}(C) - \text{제품체적}(V)}{\text{포장용적}(C)} \times 100 \\ &= \frac{2,405,376.0 - 2,251,424.0}{2,405,376.0} \times 100 \\ &= 6.4(\%) \end{aligned}$$

라. 이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6.4%이므로 기준(10% 이하)을 만족한 적정 포장으로 판정된다.

#### 4-2. 종합제품(완충·고정재를 사용한 경우)



가. 기사에서 생산되는 건강선물세트의 경우 별꽃, 인삼차, 스푼 등의 PVC 이외의 단일재질 플라스틱 완충·고정재와 함께 포장되어 건강식품 종합제품에 해당되므로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포장 횟수 2차 이내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대상품목은 포장용기의 두께가 10mm 이하이고 플라스틱 완충·고정재가 사용된 종합제품이므로 포장용적 및 제품체적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용적 : 포장상자의 두께가 10mm에 미달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의 60%를 포장용적에서 제외한다.

$$\text{포장용적}(C) = \{A-2(10-t_1) \times 0.6\} \{B-2(10-t_2) \times 0.6\} \times H$$

A : 포장용기의 길이, B : 폭의 길이, H : 높이의 길이

t1 : 포장용기의 폭방향 두께, t2 : 포장용기의 장방향 두께

(2) 제품체적 : 완충·고정재를 사용하였으므로 제품의 둘레(가로, 세로, 높이)에 외접하여 일률적으로 5mm 두께의 공간을 필요공간용적으로 인정하여 제품치수 길이, 폭, 높이에 10mm(5mm×2)씩을 더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text{제품체적}(V) = (a+10) \times (b+10) \times (c+10)$$

a : 제품의 길이, b : 제품의 폭, c : 제품의 높이

다. ㄱ사의 건강선물세트의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측정항목 및 실측치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용적을 구하기 위한 항목 및 치수

(가) 포장용기의 두께 : 3.0mm

(나) 포장용기의 길이 : 441.0mm

(다) 포장용기의 폭의 길이 : 298.0mm

(라) 포장용기의 높이의 길이 : 74.0mm

(마) 포장용적을 구하는 식에 의하여 포장용적 C는

$$\text{포장용적}(C) = \{441-2(10-3) \times 0.6\} \{298-2(10-3) \times 0.6\} \times 74 = 9,270,791.0\text{mm}^3 \quad (1)$$

(2) 선물세트 구성상품명 : 벌꿀 2개, 인삼차 1개, 스푼 1개

(가) 벌꿀의 길이 : 159.0mm

(나) 벌꿀의 폭의 길이 : 91.3mm

(다) 벌꿀의 높이의 길이 : 56.7mm

(라) 제품체적(V1) = (159+10)(91.3+10)(56.7+10)=1,141,884.0mm<sup>3</sup> (2)

(마) 인삼차의 길이 : 190.0mm

(바) 인삼차의 폭의 길이 : 139.0mm

(사) 인삼차의 높이의 길이 : 53.2mm

(아) 제품체적(V2) = (190+10)(139+10)(53.2+10)=1,883,360.0mm<sup>3</sup> (3)

(자) 스푼의 길이 : 234.0mm

(차) 스푼의 폭의 길이 : 39.0mm

(카) 스푼의 높이의 길이 : 10.8mm

$$(타) \text{ 제품체적}(V_3) = (234+10)(39+10)(10.8+10)=248,684.8\text{mm}^3 \quad (4)$$

(3) 포장공간비율

$$\begin{aligned} &= \frac{\text{포장용적}(C) - \sum \text{제품체적}(V_1 \times 2) + V_2 + V_3}{\text{포장용적}(C)} \times 100 \\ &= \frac{9,270,791.0 - [(1,141,884.0 \times 2) + 1,883,360.0 + 248,684.8]}{9,270,791.0} \times 100 \\ &= 52.4\% \end{aligned}$$

라. 이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기준 25% 이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과대포장이므로 다시 포장 설계하여 적정포장으로 개선해야만 한다.